

---

#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개요 및 dBrain 사용자 지침

---

2008. 12



**기획재정부**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개요  
및

사용자  
지침

2008  
12

dBrain

기획재정부

# 순서

I.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개요 .....	1
II.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 .....	4
1. 국가회계기준의 도입	
2. 결산보고서 구성 및 체계 변경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업무처리 변경사항	
III. 각 부처 협조 필요사항 .....	8
1. 국가자산 부채 실사완료	
2. 회계관계공무원 교육참여 독려	
3. 회계책임관 임명	
4. dBrain 시스템 미사용 기관 시스템 수정 및 연계자료 제출	
[참고 1] 결산보고서 첨부서류 정리 .....	13
[참고 2] 새로 도입되는 재무제표 예시 .....	15
[참고 3] dBrain 미사용 회계 기금 .....	18
[참고 4] 국가회계기준 제정안 .....	19
※ dBrain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	55

## I.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개요

국가회계법('07.10월 공포)은 '09.1.1일부터 정부부문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

-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해 국가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국가경영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의 산출·활용을 도모

### 1 도입배경 및 경과

#### 도입배경

- 예산집행의 자율성 확대, 재정수요의 급증 등 재정여건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선진 재정운용체계 구축 필요
  - 현재의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제도는 예산 통제에는 유용하나, 일목요연한 재정 상태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체계 구축에는 한계
- 국가재정의 종합적·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인 재정성과 관리를 위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을 추진

#### 추진경과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결정 및 사전 준비 작업 ('98.5~'03.7)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추진기획단 설치 ('04.6)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구축·운영개시 ('06.12)
- 국가회계법 공포 ('07.10)
  - '09.1.1일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을 규정

2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의 정의

발생주의 회계 ( 현금주의 회계)

: 회계처리에 있어서 경제적·재무적 거래나 사건을 인식하게 되는 시점에 따른 구분

-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경제적·재무적 자원의 변동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거래로 인식하고 회계처리
- 현금주의 회계에서는 현금의 수입·지출이 일어날 때 거래로 인식하여 회계처리 (현행 세입세출 결산방식)

복식부기 회계 ( 단식부기 회계)

: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방식에 따른 구분

- 복식부기는 경제적 거래나 사건이 발생할 때 자산·부채, 수익·비용의 변동을 서로 연계시켜 동시에 기록·관리
- 단식부기는 수입·지출의 결과만을 기록 (금전출납부식)

-
-
( )

-
-
( )

-
-
( : )

-
-
( : )

## 국가 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관리 가능

- 국가 전체의 재정현황을 종합·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

현행 회계제도	복식부기·발생주의회계 도입
채권·채무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결산되어 일괄적 파악이 곤란	국가자산 및 부채를 한 표에 나타내어 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
○ 세입·세출, 기금, 국가채권·채무등이 개별적으로 결산	○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포함하는 재무제표가 작성됨
○ 순자산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재정건전성에 대한 현황 파악이 어려움	○ 순자산 규모가 산출되어 재정건전성 관련 각종 지표 및 분석이 가능해짐

##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 체계 구축

- 사업별 투입원가정보를 산출하여 성과 중심의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현행 회계제도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
예산집행의 적법성 등 투입통제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	예산집행의 효율성 등 성과중심으로 재정을 운용
○ 정책사업별 지출내역만 제공되고 사업 성과는 파악하기 어려움	○ 정책사업별 투입원가정보가 산출되어 사업별 성과파악이 가능

## 투명하고 양질의 재정정보 제공

- 정보이용자에게 투명하고 양질의 재정정보 제공

현행 회계제도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도입
재정정보의 공개보다는 예산대비 결산의 통제가 주된 목적	정보이용자에 대한 재무보고와 공시가 주된 목적
○ 결산자료를 통한 정보이용자의 국가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며, 체계적인 재무분석이 어려움	○ 체계적이고 표준적인 재무제표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국가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이 쉬워짐
○ 단식부기의 한계로 인하여 회계기록의 정확성 검증 어려움	○ 복식부기회계의 도입에 따른 회계 기록의 자동검증기능 강화

## II.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변경사항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회계처리기준을 「국가회계기준」으로 일원화

결산보고서 구성 및 작성체계 변경

- 기존 결산보고서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결산보고서(재무제표 등) 추가
- 중앙관서별 소관 회계, 기금에 대한 통합결산보고서 제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거래 입력시 정확한 정보 입력 필요

### 1 국가회계기준의 도입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회계기준을 ‘국가회계기준(기획재정부령)’으로 일원화

- 종래 일반회계는 별도의 회계기준이 없고 기금, 기업특별회계<sup>1)</sup>,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회계처리 하였으나,
  - 국가회계법의 시행으로 국가재정부문에 ‘국가회계기준’을 통일적으로 적용하여 회계처리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함

10 ( )

11

( “ ” )

( )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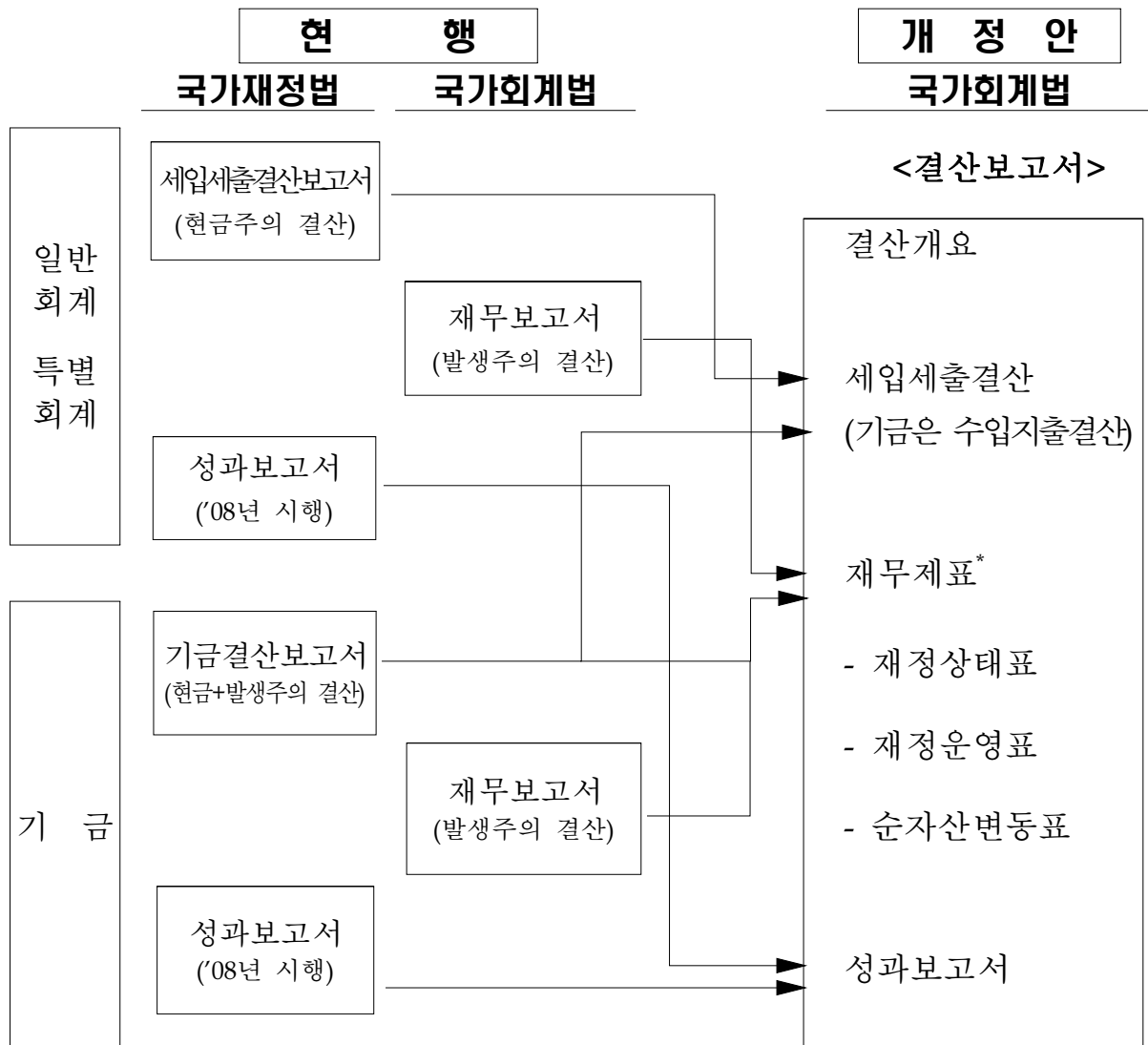
결산보고서 구성 및 체계 변경

국가재정법 · 국가회계법 간 결산관련 규정 정비

- 결산보고서 작성·제출절차 및 일정은 국가재정법에 준치
- 결산보고서의 구성·내용, 작성절차·방법은 국가회계법 이관

결산보고서 통합·체계화 (참고 1,2)

- 국가재정법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성과보고서, 기금결산보고서와 국가회계법의 재무보고서를 통합하여 재구성



\*

( '09 )



## 중앙관서별 통합결산체계 구축

- 회계·기금별, 자산별 개별결산체제를 중앙관서별 통합결산 보고서 작성체제로 전환
  - 종래에는 각 중앙관서가 회계별·기금별 및 국유재산·물품·채권·채무결산을 각각 별도로 작성하여 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09 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중앙관서장은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하여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2

###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업무처리 변경사항

자동분개 및 재무제표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는 사용자의 dBrain 업무 처리절차 준수 및 정확한 정보입력이 필수

#### 예산과목에 대한 추가정보 입력 요구

- 예산과목과 재무계정과목 관계가 일대다(1:n)인 경우 예산과목에 대한 세부항목을 선택할 필요
  - 사용자가 선택한 세부항목에 의하여 시스템이 계정과목을 자동으로 연계(Mapping)하여 분개처리

\*

#### 정보관리항목 등록 팝업화면 도입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부 수입·지출업무 처리시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화면 도입

## 내부거래 제거 개선을 위한 거래처 등록 및 사용방법 변경

- 정부결산시 내부거래 제거대상인 거래처(중앙정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하여는
  - 사용자의 거래처 등록 오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처를 일괄 등록하는 등 거래처 등록방법 개선
  - 사용자는 거래입력시 시스템에 기 등록된 거래처를 선택
- 또한, '정부간 예탁금' 등 예산과목이 내부거래 해당 항목일 경우 중앙정부 거래처를 선택하도록 통제기능 도입

## dBrain 업무처리절차 준수

- 사용자가 dBrain의 정상적인 업무처리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sup>2)</sup>가 자주 발생하여 분개오류 발생
  - 향후에는 '계약 자산취득 지출' 등과 같이 dBrain을 통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재정업무를 일괄처리하도록 통제

## dBrain 자금기능 사용 의무화

- dBrain 사용기관 중 일부 회계·기금의 업무처리시 dBrain의 '자금기능'을 사용하지 않아 회계처리 누락
  - dBrain 사용기관은 모든 재무제표 작성대상 업무를 dBrain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기금여유자금의 금융기관 위탁 등과 같이 dBrain을 사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계처리 결과를 dBrain에 연계하도록 함

---

2) : , dBrain

### Ⅲ. 각 부처 협조 필요사항

국가자산·부채 실사완료  
회계관계공무원 교육 참여 독려  
회계책임관 임명  
회계·결산 관련업무 인력충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미사용 기관 시스템 수정 및 연계자료 제출

#### 1 국가자산 부채 실사 완료

개시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국가자산·부채(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 국가채무) 실사 완료가 필수불가결

- 실사를 통해 누락·중복된 자산·부채를 파악하여 정확한 국가재정 현황의 개시 재무제표 반영가능
- 일선관서, 중앙관서 및 기금의 자산·부채 총괄관리관 등을 대상으로 이미 실사교육<sup>3)</sup> 실시(약 4,300명 참석)

각 담당자들은 실사지침서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실사를 완료하고, 실사이행 점검 등에 적극적인 협조요망

- 각 현업실사 담당자는 '08.12.31일까지 실사를 수행하여 **dBrain** 시스템에 입력 필요 (dBrain 미 사용 기관은 별도보고)
- 12월 중 외부전문기관(회계법인 등)과 함께 실사이행 점검 및 검증실사를 실시할 예정

3)

‘09년 이후에도 지속적·체계적으로 교육 실시 예정

- (일반교육) 모든 교육대상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의 기초이론에 대해서는,
  - 중앙공무원교육원에 사이버강의를 개설하여 상시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조치 ('09.2월 개시 예정)
- (중점교육) 이와 별도로, 업무 성격을 고려한 특성화 교육을 실시할 예정
  - 일선관서 회계실무 담당자들은 시스템의 정확한 입력이 중요하므로 시스템 교육과 병행하여 이론교육 실시
  - 심도 있는 회계이론 교육이 필요한 결산 담당자들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여 회계교육 실시

(회계책임관) 각 중앙관서의 회계·결산·내부통제 등 회계 및 결산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를 의미

- 국가회계법 제7조에 의해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함

\* (            7            )

(도입배경) 국가회계제도 개선으로 국가의 회계·결산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할 주체 필요

- 기존 세입세출(기금의 경우 수입지출) 결산뿐만 아니라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까지 추가되어 결산작업이 방대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별 결산으로 부처별 책임성 강조
- 국가자산·부채, 재정운영상태 등을 파악하고, 재정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할 필요

(회계책임관의 역할) 내부통제 등 회계업무에 관한 사항, 회계·결산 및 분석, 관계공무원 지도·감독 등

- ① (내부통제) 회계처리의 적정 여부와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sup>4)</sup>
  - 회계정보의 오류통제 및 회계관계직원의 부정 방지
  - 회계정보의 주기적 점검 및 조정 등 내부검증
  - 그 밖에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4)

② (회계·결산 및 분석) 각 중앙관서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회계처리 및 결산을 총괄 수행

- 해당 부처의 소관 회계·기금을 통합한 결산보고서<sup>5)</sup> 작성
- 통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제거, 결산조정분개<sup>6)</sup> 등 회계관련 사항 수행
- 재무제표 분석을 통한 유용한 재정정보(사업별 원가 등)의 생성 및 보고

(회계책임관의 임명)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 부처의 조직 특성을 반영하여 회계책임관을 임명

- 결산업무의 양이 방대해질 것을 고려하여 기획조정실(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내부에 회계·결산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을 신설할 경우, 해당 조직의 과장 또는 팀장급
- 회계책임관의 임명은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 관서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같음할 수 있음

ex)

각 부처는 조속히 회계책임관을 임명하여 기획재정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

- 새로운 회계·결산제도가 차질없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랍

---

5) , ( ), ,

6)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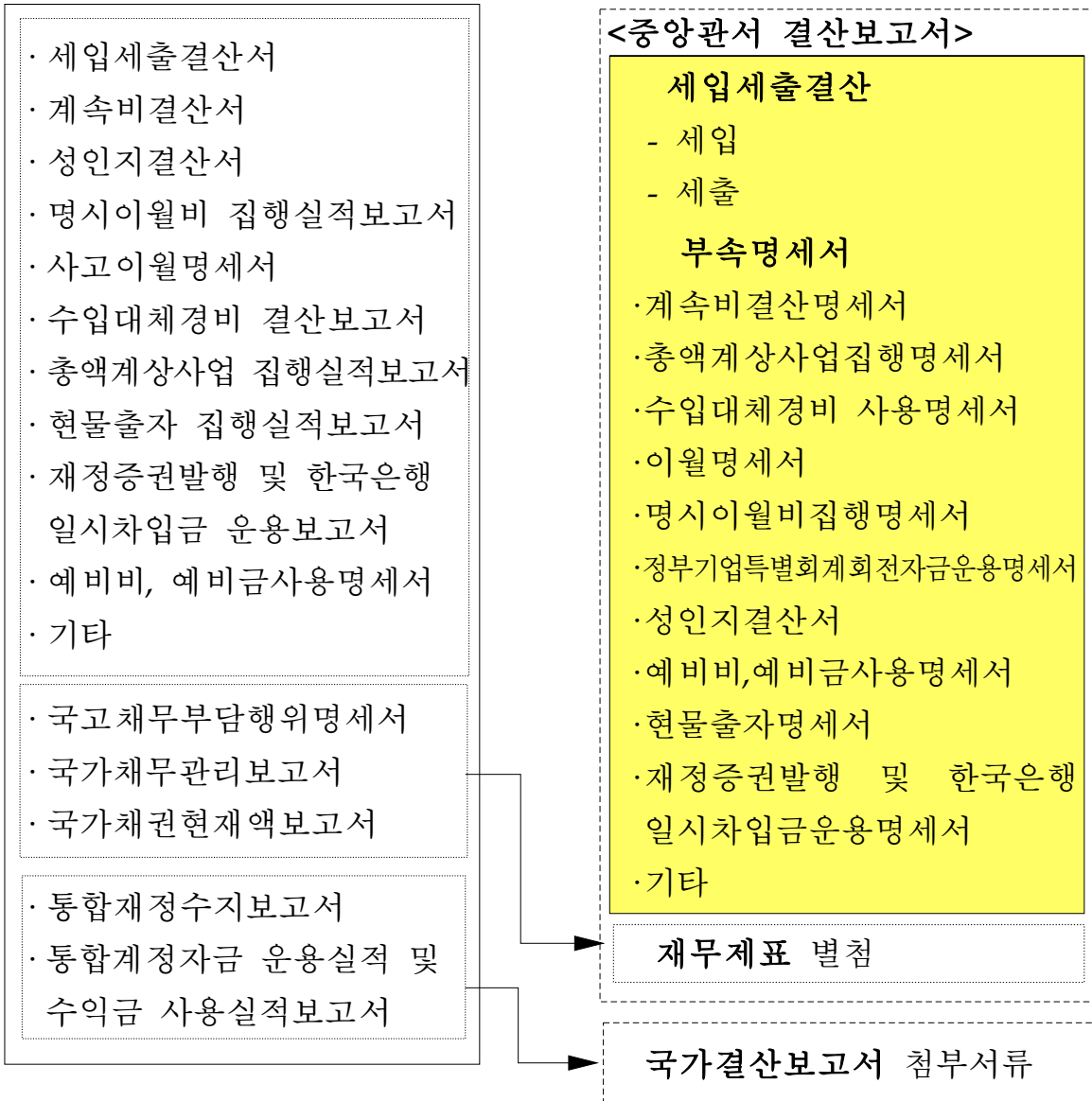
**참고 1**      **결산보고서 첨부서류 정리**

**일반 · 특별회계 : 세입세출결산**

- 기존 세입세출결산 관련 서류를 결산서별(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 등) 첨부서류로 재구성

**현      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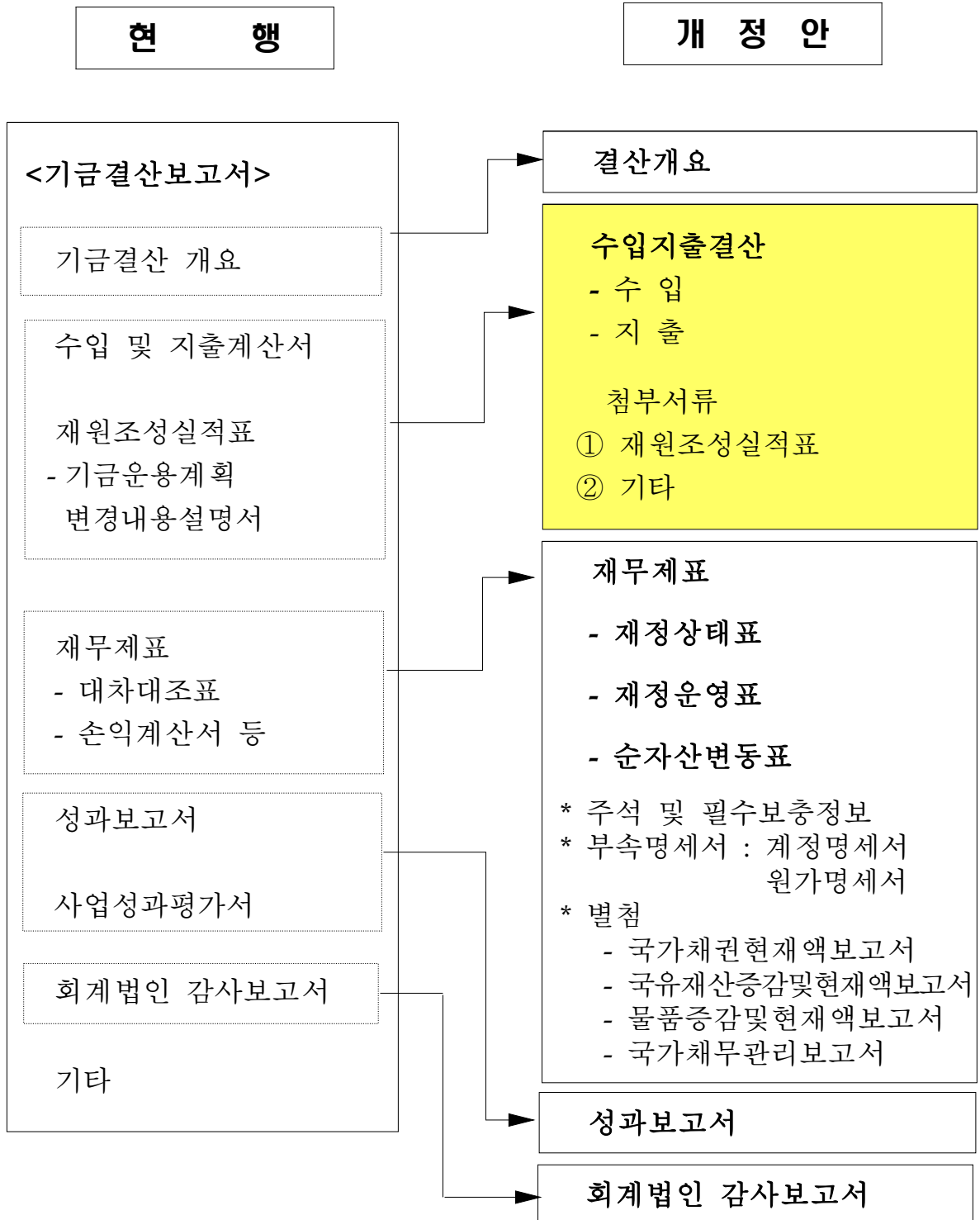
**개      정      안**





## 기금 : 수입지출결산

- 현행 기금결산보고서는 보고서작성 회계기준에 따라 수입지출결산과 재무제표로 정리



재정상태표

○ 국가, 중앙관서 또는 기금별 자산, 부채, 순자산 금액 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상태 전반에 대한 현황을 표시

	2009		2008(개시)	
<b>자산</b>				
<b>I. 유동자산</b>		35		6
1. 현금및현금성자산		-		-
2. 미수채권	50		20	
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10)		(11)	
미수채권대손충당금	(5)	35	(3)	6
<b>II. 투자자산</b>		25		15
1. 장기투자증권		20		10
2. 기타투자자산		5		5
<b>III. 일반유형자산</b>		215		230
1. 토지		150		150
2. 건물	105		100	
건물감가상각누계액	(40)	65	(20)	80
<b>IV. 사회기반시설</b>		150		140
1. 도로	200		200	
도로사용수익권	(50)	150	(60)	140
<b>자산 계</b>		<u>425</u>		<u>391</u>
<b>부채</b>				
<b>I. 유동부채</b>		80		50
1. 단기차입금		60		50
2. 기타유동부채		20		-
<b>II. 장기차입부채</b>		90		88
1. 국채	100		100	
국채할증(할인)발행차금	(10)	90	(12)	88
<b>III. 장기충당부채</b>		40		30
1. 퇴직급여충당부채		40		30
<b>부채 계</b>		<u>210</u>		<u>168</u>
<b>순자산</b>				
I. 일반순자산		100		100
II. 적립금및잉여금		110		120
III. 순자산조정		5		3
<b>순자산 계</b>		<u>215</u>		<u>223</u>
<b>부채와 순자산 계</b>		<u>425</u>		<u>391</u>

## 재정운영표

- 국가, 중앙관서 또는 기금별로 회계연도 동안 집행한 정책사업(프로그램)의 원가와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과를 표시
  - 프로그램별 총원가에서 관련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별 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수익을 가감하여 재정운영순원가를 산출하고
  - 이에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는 비교환수익 중 해당부처에 직접 귀속되는 비교환수익을 가산하여 당기운영결과를 산출

	2009		
	총원가	수익	순원가
I. 프로그램순원가	32	(30)	2
1. 프로그램 a	32	(30)	2
II. 관리운영비			30
1. 인건비			30
III. 비배분비용			2
1. 이자비용			2
IV. 비배분수익			5
1. 이자수익			5
V. 재정운영순원가 (I + II + III - IV)			29
VI. 비교환수익등			-
VII. 재정운영결과 (VI - V)			<u>(29)</u>

a

## 순자산변동표

○ 국가, 중앙관서 또는 기금별로 회계연도 동안의 순자산의 증감내역 및 원인을 표시

- 정부의 경우 자본금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순자산 구성항목의 성격에 따라 일반순자산, 적립금및잉여금 및 순자산조정으로 구분

	일반순자산	적립금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	합 계
I. 기초순자산	100	120	3	223
1. 보고금액	100	120	3	223
II. 재정운영결과	-	(29)	-	(29)
III. 재원의 조달과 이전	-	19	-	19
1. 재원의조달	-	63	-	63
(1) 국고수입	-	43	-	43
(2) 부담금수익	-	10	-	10
(3) 기타비교환수익	-	10	-	10
2. 재원의이전	-	44	-	44
(1) 국고이전지출	-	44	-	44
IV. 조정항목	-	-	2	2
1. 투자증권평가이익	-	-	2	2
V. 기말순자산	100	110	5	215

**참고 3**

**dBrain 미사용 회계·기금**

연계기관	주무부처	회계/기금	비고
국방부 일반회계	국방부	일반회계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방위사업청	일반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방부	특별회계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국방부	특별회계	
국방홍보원 일반회계	국방부	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지식경제부	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지식경제부	기업특별회계	
우편사업특별회계	지식경제부	기업특별회계	
국민연금기금	보건복지가족부	국고금관리법 대상 기금	
국민주택기금	국토해양부	국고금관리법 대상 기금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국고금관리법 대상 기금	
군인연금기금	국방부	국고금관리법 대상 기금	
농지관리기금	농림수산식품부	국고금관리법 대상 기금	
외국환평형기금	기획재정부	국고금관리법 대상 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교육과학기술부	민간기금	
사학진흥기금	교육과학기술부	민간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민간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민간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금융위원회	민간기금	
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민간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위원회	민간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위원회	민간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획재정부	민간기금	
근로자복지진흥기금	노동부	민간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민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민간기금	
영화발전기금	문화체육관광부	민간기금	
국제교류기금	외교통상부	민간기금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	중소기업청	민간기금	
수출보험기금	지식경제부	민간기금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지식경제부	민간기금	
공무원연금기금	행정안전부	민간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민간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민간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민간기금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부	민간기금	
		36개 회계/기금	

# 국가회계기준 제정안

제정 2008. . .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회계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준의 적용범위) ①이 기준은 국가회계법 제3조에 따른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이 기준의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이 기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습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회계실체”라 함은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규, 예산 또는 기타 제약에 따라 독립적으로 설정된 회계단위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말한다.

2. “보고실체”란 독립적인 예산권한을 가지고 경제적 자원의 사용 및 통제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실체로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를 말한다.
3. “재정상태표일”이라 함은 재정상태표 작성 기준일을 말한다.
4. “경제적 자원”이라 함은 국가의 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모든 자원을 말한다.
5. “공정가액”이라 함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간에 거래될 수 있는 교환가격을 말한다.
6. “내부거래”라 함은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 상계되어야 하는 국가회계실체 및 보고실체간의 거래를 말한다.
7. “현행대체원가”라 함은 현재 시점에서 매입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을 말한다.
8. “회수가능가액”이라 함은 순실현가능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①재무제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의 결산보고서 중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②부속서류는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를 포함한다.

③재무제표는 국가회계실체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재정활동내용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재무제표는 국가회계실체가 공공회계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가 여부를 평가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상태 및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관한 정보
2. 국가사업의 목적을 능률적, 효과적으로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정보
3. 예산과 그 밖의 관련 법규의 준수에 관한 정보

제5조(일반원칙)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상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에 의하여 결정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원칙) 재무제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

1. 재무제표는 당해 회계연도분과 직전 회계연도분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2. 비교식으로 작성되는 양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는 계속성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며, 회계기준이나 회계정책 및 국가회계법 적용 범위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공시한다.
3. 재무제표의 과목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별도의 과목으로 표시하거나 다른 과목으로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4. 재무제표를 통합하여 작성할 경우 내부거래는 상계·제거한다.

## 제 2 장 재정상태표

### 제 1 절 총 칙

제7조(재정상태표)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내역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제8조(재정상태표의 작성기준) ①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동성이란 현금으로 전환되기 용이한 정도를 말한다.

②자산, 부채 및 순자산은 총액으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순자산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정상태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 2 절 자 산

제9조(자산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국가회계실체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고,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한다. 다만, 소유권을 가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②자산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③유산자산은 현세대 및 미래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자산을 말한다. 유산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종류 및 현황 등을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한다.

제10조(자산의 분류) 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1조(유동자산) ①유동자산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내에 현금화되거나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②유동자산은 현금및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단기투자증권, 미수채권, 단기대여금 및 기타유동자산 등을 포함한다.

③기타유동자산은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및 재고자산 등을 포함한다.

제12조(투자자산) ①투자자산은 투자 또는 권리행사 등의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한다.

②투자자산은 장기금융상품, 장기투자증권, 장기대여금 및 기타 투자자산 등을 포함한다.

제13조(일반유형자산) ①일반유형자산은 고유 행정활동에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을 말하며,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

②일반유형자산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전비품,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및 기타일반유형자산 등을 포함한다.

③제2항의 전비품은 전쟁의 억제 및 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적인 군사장비 및 탄약 등을 말한다.

제14조(사회기반시설) ①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형성을 위하여 대규모 투자로 건설되고 경제적 효과가 장기에 걸쳐 나타나는 자산을 말한다.

②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기타사회기반시설 (상수도를 포함한다) 및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등을 포함한다.

**제15조(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산업재산권, 광업권, 소프트웨어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

**제16조(기타비유동자산)** 기타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말한다.

### 제 3 절 부 채

**제17조(부채의 정의 및 인식기준)** ①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시점의 의무를 말한다.

②부채는 향후 이행을 위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의무 중 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제18조(부채의 분류)**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하여 재정상태표에 표시한다.

제19조(유동부채) ①유동부채는 1년 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로서 단기국채, 단기공채,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유동부채 등을 포함한다.

②기타유동부채는 미지급금, 미지급비용, 선수금, 선수수익 등을 포함한다.

제20조(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는 유동부채가 아닌 만기가 재정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상인 확정부채로서 국채, 장기차입금 및 기타장기차입부채 등을 포함한다.

제21조(장기충당부채) 장기충당부채는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부채로서 퇴직급여충당부채, 연금충당부채, 보험충당부채 및 기타 장기충당부채 등을 포함한다.

제22조(기타비유동부채) 기타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및 장기충당부채에 속하지 않는 부채를 말한다.

#### 제 4 절 순 자 산

제23조(순자산의 구분) ①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액으로 한다.

②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기본순자산은 순자산에서 적립금 및 잉여금과 순자산조정을 차감한 잔여액으로 표시한다.
2. 적립금 및 잉여금은 임의적립금, 전기이월결손금·잉여금, 재정운영결과 등을 표시한다.
3. 순자산조정은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순자산의증감 등을 표시한다.

## 제 3 장 재정운영표

### 제 1 절 총 칙

제24조(재정운영표)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 내역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체계적으로 표시하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제25조(재정운영표의 구분) ①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순원가, 재정운영순원가,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투입한 원가합계에서 다른 회계실체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 받거나 배부한 원가를 가감하고 프로그램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③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다음 각호의 관리운영비, 비배분비용 및 비배분수익을 가감하여 표시한다.

1. 관리운영비는 기관운영과 같이 기관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을 말하며 기업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2. 비배분비용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까지 추적하여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프로그램에 배부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말한다.
3. 비배분수익은 프로그램과 관련없이 발생되거나 프로그램 이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말한다.

④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가감하여 표시한다. 단,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비교환수익 등은 순자산 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에 표시한다.

**제26조(국가 재정운영표)** 각 중앙관서 재정운영표를 통합하는 경우 재정운영표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

1. 재정운영표는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작성하되 재정운영순원가, 비교환수익 등 및 재정운영결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2. 재정운영순원가는 중앙관서 별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3.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표시한다.

제27조(재정운영표의 작성기준) 재정운영표의 모든 비용과 수익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거래나 사실이 발생한 기간에 보고한다.

## 제 2 절 수 익·비 용

제28조(수익·비용의 정의 및 구분) ①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적·행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기부를 받는 등에 따른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②비용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회계기간 동안 발생한 자원의 유출이나 사용, 또는 순자산의 감소를 말한다.

③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으로 구분되며, 교환수익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발생한 수익이며,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적·행정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거나 또는, 제공받은 가치에 대해 전혀 대가를 제공하지 않거나 현저히 적은 대가를 제공한 경우 발생하는 수익이다.

제29조(수익·비용의 인식기준) ①수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인식한다.

1. 교환수익은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 비교환수익은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②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인식한다.

1.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 등 재정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자산이 감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또는 법령 및 기타 제약 등에 의하여 지출에 대한 의무가 존재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2. 과거에 인식한 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 또는 소멸되거나 자원의 지출의 수반 없이 부채가 발생 또는 증가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비용을 인식한다.

제30조(비교환거래 수익인식의 세부기준) 비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은 수익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인식한다.

1.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자진신고 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2. 정부부과 방식의 국세는 국가가 부과고지한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3. 원천징수되는 국세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납부하는 때에 인식한다.
4. 연부연납 또는 분납이 가능한 국세의 경우에는 징수할 세금이 확정된 때 그 납부할 세액 전체를 수익으로 인식한다.
5. 부담금수익, 기부금수익, 무상이전수입 등의 비교환수익은 법적·행정·계약적 청구권이 확정된 때에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6. 재제금 수익은 벌금이나 과태료 등이 납부되거나 몰수가 집행된 때 그 확정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한다.

제31조(원가계산) ①원가는 국가회계실체가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경제적 자원의 가치를 말한다.

②원가의 집계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 제 4 장 자산·부채의 평가

제32조(자산의 평가기준) ①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의 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를 기초로 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국가회계실체 또는 중앙관서 간 발생하는 관리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③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자산은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며 감액내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

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④군수품관리법에 의해 관리되는 전비품 등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를 적용할 수 있다.

**제33조(유가증권의 평가)** ①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종목별로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유가증권은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한다. 단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내 또는 1년 내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만기가 1년 이상 또는 1년 이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한다.

③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지분증권과 기타장·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단, 투자목적의 장·단기투자증권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 변동표 상 순자산조정 항목으로 표시한다.

④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제34조(미수채권 등의 평가) ①미수채권은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②장·단기대여금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재고자산의 평가) ①재고자산이란 판매 또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②제조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품목별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물흐름 및 원가산정 방법 등에 비추어 다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법,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표시한다.

③제2항에 따라 선택된 재고자산 평가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없다. 평가방법의 정당한 변경사유 발생시에는 제50조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④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원재료 이외의 재고자산의 시가는 순실현가능가액을 말하며, 생산과정에 투입될 원재료의 시가는 현행대체원가를 말한다.

제36조(압수품 및 몰수품의 평가) ①압수품 및 몰수품은 몰수 판결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된 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1. 화폐성자산은 압류 및 몰수 당시의 시장가격으로 표시한다.
2. 비화폐성자산은 감정가액 또는 공정가액 등으로 평가하여 표시한다.

②압수품 및 몰수품의 내역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37조(일반유형자산의 평가)** ①일반유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건설 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정된 기간 동안 정액법 등을 적용하여 감가상각 한다.

②일반유형자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기재한다.

**제38조(사회기반시설의 평가)** ①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하도록 하며, 건물, 구축물 등 세부 구성 요소별 감가상각을 원칙으로 한다.

②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당시의 용역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가상각하지 않고 유지보수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 비용을 대체(이하 “감가상각대체방법”이라 한다)할 수 있다. 이는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의 용역잠재력이 취득당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한다.

제39조(무형자산의 평가) ①무형자산은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한다.

②무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상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상각기간은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취득 후 지출) 일반유형 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41조(부채의 평가기준) 재정상태표에 기재하는 부채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만기상환가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2조(국채의 평가) ①국채의 발행가액은 국채발행수수료 및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을 차감한 후의 가액으로 한다.

②국채액면가액과 발행가액의 차이는 국채할인(할증)발행차금의 과목으로 국채액면가액에 가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며, 동 발행차금은 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유효이자율로 상각(환입)하여 국채에 대한 이자비용에 가감한다.

제43조(퇴직급여충당부채의 평가) ①퇴직급여충당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공무원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퇴직금지급대상자가 일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으로 평가한다.

②퇴직금산정내역, 퇴직금추계액, 회계연도 중 실제로 지급한 퇴직금 등은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의 평가) ①연금충당부채는 보험수리적 계산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금비용을 반영하여 평가하며, 기초연금충당부채에 가산하고 기중연금지급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②보험충당부채는 부보된 사건에 대한 우발상황에 따라 평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및 보험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45조(융자보조원가충당금과 보증충당부채의 평가) ①융자보조원가충당금은 융자사업에서 발생한 융자금원금과 추정 회수가능액의 현재가치와의 차액으로 평가한다.

②보증충당부채는 보증채무불이행에 따른 추정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보조원가충당금 및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46조(채권·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①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②현재가치 가액은 당해 채권·채무로 인하여 미래에 수취하거나 지급할 총금액을 당해 거래의 유효이자율(유효이자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한 조건의 국채 유통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으로 한다. 한편, 명목가액과 현재가치 가액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로 매 회계연도 환입 또는 상각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제47조(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환산) 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하여야 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재정상태표가액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외화환산손실 또는 외화환산이익의 과목으로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중요한 외화자산·부채의 내용, 환산기준 및 환산손익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④화폐성 외화자산·부채는 화폐가치의 변동과 상관없이 자산·부채금액이 계약 등에 의하여 일정액의 화폐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유가증권과 같이 화폐성·비화폐성의



양면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부채는 당해 자산·부채의 보유상의 목적 또는 성질에 따라 구분한다.

⑤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화환산시 발생하는 미실현보유손익은 순자산조정 항목으로 반영한다.

**제48조(리스거래의 처리)** ①리스거래는 일정기간 설비 등 특정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회사로부터 이전 받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②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실질적으로 국가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운용리스로 분류한다.

③운용리스에 대하여는 리스료를 당 회계연도 비용으로 처리하고 금융리스에 대하여는 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액 중 낮은 금액을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고 감가상각한다.

**제49조(파생상품의 평가)** ①파생상품은 당해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자산·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을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한다.

②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은 발생시점에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한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처리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의 경우 그 거래목적 및 거래내역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며 위험회피목적의 경우에는 위험회피 대상항목, 위험회피 대상범위, 위험회피활동을 반영하기 위한 회계처리방법, 이연된 손익금액 등을 기재한다.

**제50조(회계변경과 오류수정)** ①회계정책 및 회계추정의 변경은 그 변경으로 인하여 재무제표를 보다 적절히 표시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법령 등에서 새로운 회계처리기준을 채택하거나 기존 회계처리기준을 폐지함으로 인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할 수 있으며 유형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순자산변동표상 조정항목 등으로 반영한다. 다만, 회계정책의 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계변경 효과를 당기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반영할 수 있다.
2.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인한 영향은 당기 이후의 기간에 미치는 것으로 한다.
3. 회계정책 또는 회계추정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 변경사유 및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②오류수정사항이란 회계기준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경우로써 당기에 발견한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당기 재정운영표에 반영한다. 다만, 전 회계연도 또는 그 이전기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순자산

변동표의 순자산조정 등으로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한다.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는 회계기간의 재무제표항목은 재작성한다.

③전 회계연도 또는 그 이전기간의 오류수정의 내용은 주석으로 기재하며, 특히 중대한 오류를 수정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중대한 오류로 판단한 근거
2. 비교재무제표에 표시된 과거회계기간에 대한 수정금액
3. 비교재무제표가 재작성 되었다는 사실

**제51조(우발상황)** ①우발상황은 진행 중인 소송사건, 타인의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등과 같이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회계실체가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하여서만 그 의무나 권리의 존재여부가 확인되며 현재 그 실현여부가 불확실한 현재의 상태 또는 상황을 말한다.

②우발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고 동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손실을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2. 재정상태표일 현재 우발손실의 발생이 확실하지 않거나 우발손실의 발생은 확실하나 동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발상황의 내용, 우발손실에 따른 재무적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3. 우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확실하고 이익의 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우발상황의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 제 5 장 순자산변동표

제52조(순자산변동표) ①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나타낸 재무제표로서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및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②국가 순자산변동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제53조(조정항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외국환평형기금평가손익 및 기타순자산의 증감등을 포함한다.

## 제 6 장 필수보충정보, 주석 및 부속명세서 등

제54조(필수보충정보) ①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않았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2. 연금보고서

3. 보험보고서
  4. 사회보험보고서
  5. 국세징수활동표
  6.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7. 기타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았지만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②필수보충정보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55조(주석)** ①주석은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주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것을 말한다.

②이 기준의 각 조항에 제시된 주석사항 이외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1.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3. 장기충당부채
4. 외화자산 및 부채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파생상품, 담보제공자산 내역 포함)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7. 순자산조정내역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에 제시된 주식사항 이외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주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제56조(부속명세서)** ①부속명세서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내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②부속명세서의 종류, 작성기준 및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제57조(재무제표의 서식)** 보고실체가 작성하여야 하는 재무제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정상태표: 별지 제1호 서식
2. 재정운영표: 별지 제2-1호(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서식, 제2-2호(국가) 서식
3. 순자산변동표: 별지 제3-1호(회계·기금 및 중앙관서) 서식, 제3-2호(국가) 서식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14조, 제38조 및 제44조와 제45조 중 보증충당부채에 관한 회계처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재무제표 작성 적용례) 이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취득가액이 확인 불가능한 시행일 이전 취득 자산의 미인식)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가액을 확인하거나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식하지 않는 사유, 해당 자산의 종류와 취득시기 및 관리상태에 대하여 필수보충정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가격개정에 관한 특례) 이 기준시행일 이전에 국유재산법에 따라 가격개정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이 기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가격개정한 금액을 시행일 시점의 자산가액으로 계상한다.

제5조(출납정리기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특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장의 규정에 따라 출납정리기한 중 발생하는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시행령 제5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당해 회계연도 말일에 수입된 것으로 본다.
2.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지출금은 당해 회계연도 말일에 지출된 것으로 본다.

3. 시행령 제7조 단서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교부 받은 관서운영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말일 이후에 반납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말일에 반납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자산과 부채 회계처리 특례)**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의 회계처리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부처는 해당 자산과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재 정 상 태 표

당기 : 20XY년 12월 31일 현재  
 전기 : 20XX년 12월 31일 현재

OO회계/기금, OO부처, 대한민국정부

(단위 : )

	<u>20XY</u>		<u>20XX</u>	
.		XXX		XXX
1.		XXX		XXX
2		XXX		XXX
3		XXX		XXX
4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5	XXX		XXX	
	XXX	XXX	XXX	XXX
6		XXX		XXX
.		XXX		XXX
1.		XXX		XXX
2		XXX		XXX
3	XXX		XXX	
	XXX	XXX	XXX	XXX
4		XXX		XXX
.		XXX		XXX
1.	XXX		XXX	
	XXX	XXX	XXX	XXX
2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계속>

3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4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5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6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7	XXX		XXX	
	XXX	XXX	XXX	XXX
8		XXX		XXX
.		XXX		XXX
1.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2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3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4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5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6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7		XXX		XXX

<계속>

.			XXX		XXX
1.			XXX		XXX
2			XXX		XXX
3			XXX		XXX
4			XXX		XXX
.			XXX		XXX
1.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2			XXX		XXX
			XXX		XXX
.			XXX		XXX
1.		XXX		XXX	
	( )	XXX		XXX	
		XXX	XXX	XXX	XXX
2		XXX		XXX	
	( )	XXX		XXX	
		XXX	XXX	XXX	XXX
3			XXX		XXX
4			XXX		XXX
5		XXX		XXX	
		XXX	XXX	XXX	XXX
.			XXX		XXX
1.		XXX		XXX	
	( )	XXX		XXX	
		XXX	XXX	XXX	XXX
2		XXX		XXX	
	( )	XXX		XXX	
		XXX	XXX	XXX	XXX
3			XXX		XXX
4			XXX		XXX

<계속>

.		<u>XXX</u>		<u>XXX</u>
1.		XXX		XXX
2		XXX		XXX
3		XXX		XXX
4		XXX		XXX
.		<u>XXX</u>		<u>XXX</u>
1.	XXX		XXX	
	<u>XXX</u>	XXX	<u>XXX</u>	XXX
2.		XXX		XXX
		<u>XXX</u>		<u>XXX</u>
.		XXX		XXX
.		XXX		XXX
.		XXX		XXX
		<u>XXX</u>		<u>XXX</u>
		<u>XXX</u>		<u>XXX</u>

[별지 제2-1호 서식]

## 재 정 운 영 표

당기 :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OO회계/기금, OO부처

(단위 : )

		20XY			20XX		
		XXX	(XXX)	XXX	XXX	(XXX)	XXX
.		XXX	(XXX)	XXX	XXX	(XXX)	XXX
1.	(A)	XXX	(XXX)	XXX	XXX	(XXX)	XXX
2.	(B)	XXX	(XXX)	XXX	XXX	(XXX)	XXX
3.	(C)	XXX	(XXX)	XXX	XXX	(XXX)	XXX
4.	(D)	XXX	(XXX)	XXX	XXX	(XXX)	XXX
....							
.				XXX			XXX
1.				XXX			XXX
2.				XXX			XXX
.				XXX			XXX
1.				XXX			XXX
2.				XXX			XXX
3.	.....			XXX			XXX
.				(XXX)			(XXX)
1.				XXX			XXX
2.				XXX			XXX
3.	.....			XXX			XXX
.				XXX			XXX
.				(XXX)			(XXX)
1.				XXX			XXX
2.				XXX			XXX
3.				XXX			XXX
4.				XXX			XXX
5.				XXX			XXX
6.				XXX			XXX
.				XXX			XXX
				XXX			XXX

[별지 제2-2호 서식]

## 재 정 운 영 표

당기 :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정부

(단위 : )

	<u>20XY</u>		<u>20XX</u>	
.		XXX		XXX
1.		XXX		XXX
2.		XXX		XXX
3.		XXX		XXX
4 ...				
.		( <del>XXX</del> )		( <del>XXX</del> )
1.				
(1)	XXX		XXX	
(2)	XXX		XXX	
(3)	XXX	XXX	XXX	XXX
2.	_____	XXX	_____	XXX
3.		XXX		XXX
4.		XXX		XXX
5.		XXX		XXX
6.		XXX		XXX
7.		XXX		XXX
.		_____	_____	XXX
		=====	=====	XXX

[별지 제3-1호 서식]

##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OO회계/기금, OO부처

(단위 : )

		XXX	XXX	XXX	XXX
1.		XXX	XXX	XXX	XXX
2.		XXX	XXX	XXX	XXX
3.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1.			XXX		XXX
(1)			XXX		XXX
(2)			XXX		XXX
(3)			XXX		XXX
(4)			XXX		XXX
(5)			XXX		XXX
(6)			XXX		XXX
(7)			XXX		XXX
2.			XXX		XXX
(1)			XXX		XXX
(2)			XXX		XXX
(3)			XXX		XXX
		XXX	XXX	XXX	XXX
1.		XXX	-	-	XXX
2.		-	-	XXX	XXX
3.		-	-	XXX	XXX
4.		-	-	XXX	XXX
5.		XXX	XXX	XXX	XXX
		XXX	XXX	XXX	XXX

[별지 제3-2호 서식]

##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XY년 1월 1일부터 20XY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XX년 1월 1일부터 20XX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정부

(단위 : )

.	XXX	XXX	XXX	XXX
1.	XXX	XXX	XXX	XXX
2.	XXX	XXX	XXX	XXX
3.	XXX	XXX	XXX	XXX
.		XXX		XXX
.	XXX	XXX	XXX	XXX
1.	XXX	-	-	XXX
2.	-	-	XXX	XXX
3.	-	-	XXX	XXX
4.	-	-	XXX	XXX
5.	XXX	XXX	XXX	XXX
.	XXX	XXX	XXX	XXX



# dBrain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2008. 12.

기 획 재 정 부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



## 〈 目 次 〉

1. dBrain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개요 ..... 59
2. 자동분개 절차 ..... 61
3. 사용자별 역할 ..... 63
4. 팝업화면을 통한 정보입력 ..... 66
5. 거래처 등록 및 사용방법 ..... 68
6. 결산절차 ..... 75
7. 업무별 사용자 오류유형 및 입력요구사항 예시 .... 80



# 1. dBrain의 발생주의 · 복식부기회계 개요

## 거래의 기록

거래발생시 사용자 입력내용을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회계전표를 생성하고 결과를 분개장 및 총계정원장 등 대장에 기록

- 거래는 사용자가 입력한 예산과목 및 정보관리항목에 따라 계정과목이 자동 선택되어 분개되고 총계정원장 등에 전기

거래기록시에는 분개내역뿐만 아니고, 결산조정분개 내부거래 제거 부속명세서 작성 등을 위한 정보도 동시에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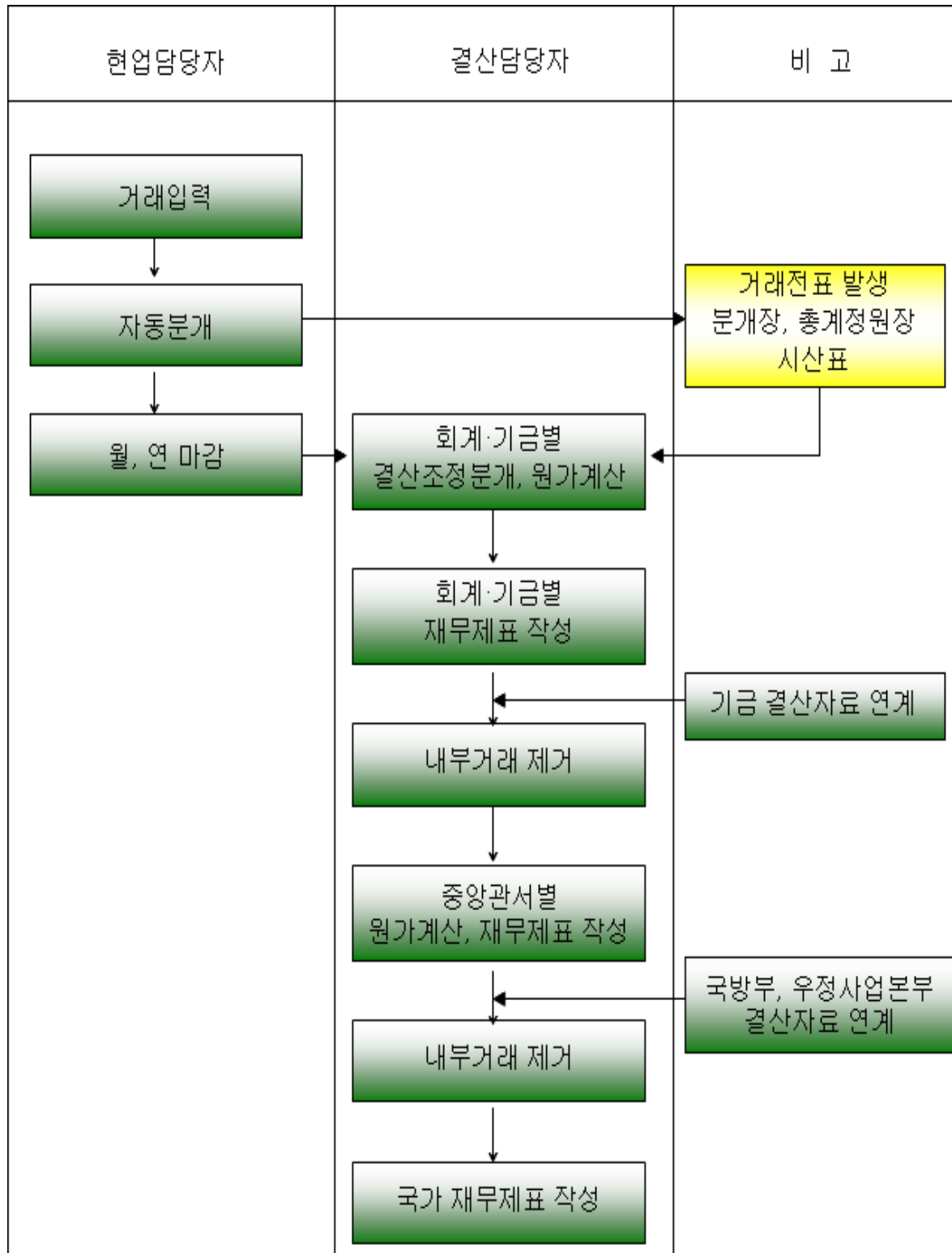
- dBrain 일부기능 미사용기관(수입실적 연계, 자금모듈 미사용 기관)의 경우 거래실적을 연계받아 거래내용을 기록(자체 결산 기관 제외)

## 결산 및 재무제표 작성

- 계정 및 대장을 마감하고 총계정원장 등을 기초로 재무제표 등 결산보고서 작성
- 결산보고서는 일선관서 마감후 결산조정분개를 실행하고 내부거래 제거 및 원가계산후 회계별·중앙관서별 및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중앙관서별 및 국가 결산보고서는 dBrain 미사용기관의 결산 정보 연계 취합후 내부거래를 제거하여 통합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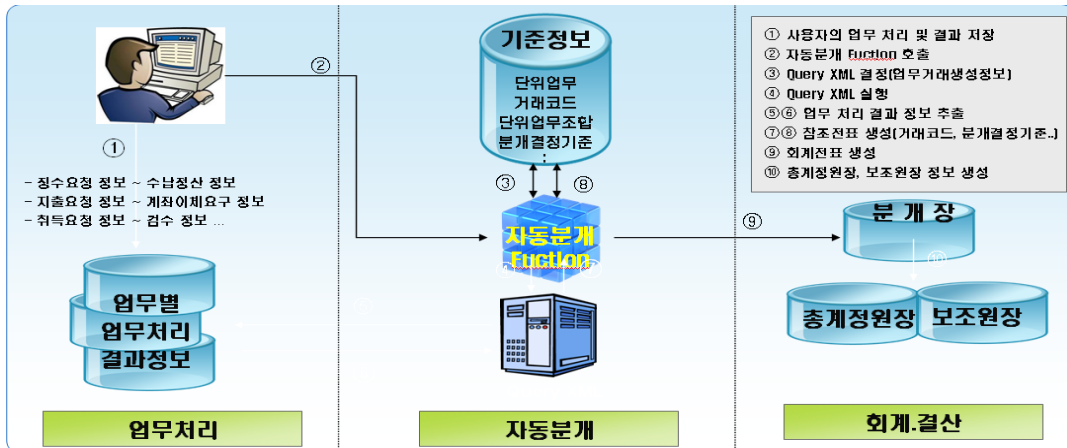
<참고> dBrain의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업무흐름



## 2. 자동분개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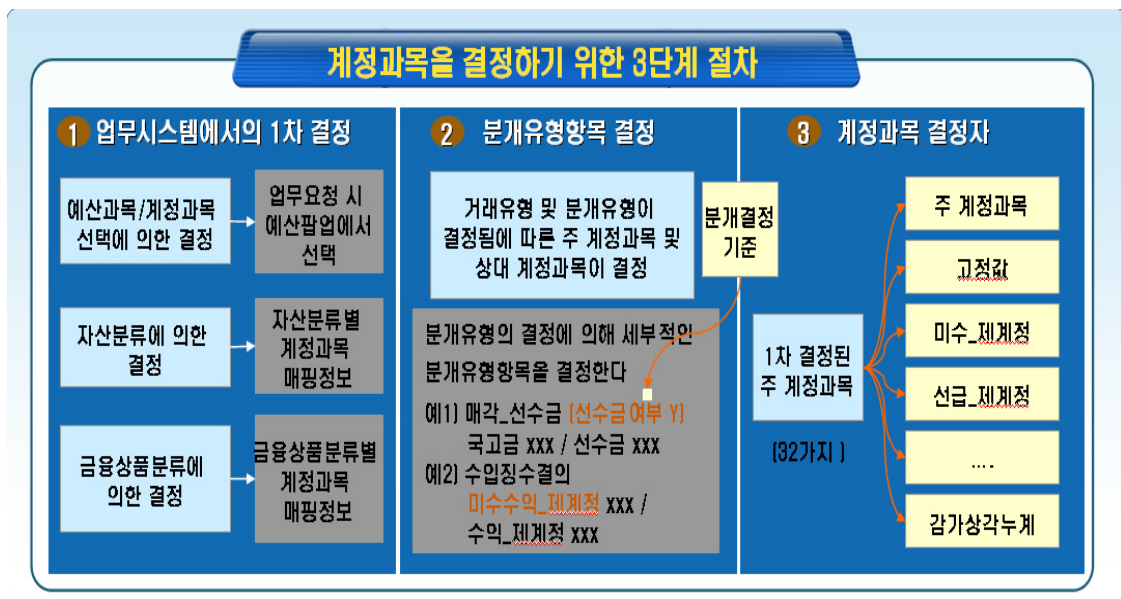
### 전체 분개처리 흐름

- 자동분개는 사용자의 입력내용을 시스템이 분석하여 분개하고 그 결과를 분개장 및 총계정원장 등에 전기



- 분개형태 및 계정과목 결정

- 거래코드 및 사용자 등록 정보에 따라 분개형태 결정
- 사용자가 선택한 예산과목, 자산종류, 수수료 여부 및 미수 제계정 등에 따라 계정과목이 단계적으로 결정



## 자동분개 전표 구성요소

### ○ 헤더(Header)

- 회계연도 및 소관회계, 사업, 거래일자, 회계일자, 일선관서, 예산과목 등의 거래 발생과 관련한 공통적인 정보관리

### ○ 분개내역

-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진 계정과목과 금액 표시

### ○ 정보관리항목

- 각 계정과목별 관리항목, 거래처 및 적요, 계약시작일, 계약종료일, 계약번호, 자산검수번호 등으로서 내부거래제거 또는 결산조정 분개 등에 활용

**Header**

회계연도	2008	전표번호	00013851	소관	077	국토해양부
회계	11000	일반회계				
사업	140-142-5800-5831-302 지역개발 / 지역 및 도시 / 국토지리정보원운영 / 국토지리관리 / 국가기준점관리					
거래일자	2008-09-22	회계일자	2008-09-22	일선관서	08131399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 지출관	
예산과목	260-00 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					

(단위 : 원)

**계정과목**

차	변	금	액	대	변	금	액
1	계정과목	21110205	기타의미지급금	61010000	국고수입	92,462,000	92,462,000
2	합	계	92,462,000	합	계	92,462,000	

**정보관리항목**

관리항목	관리항목값	관리항목	관리항목값
1	적요	완성금(수준확량-전의지구)	적요
2	거래처분류코드	430-민간-비금융기관	430-민간-비금융기관
3	거래처코드	110605870- (유) 대산이앤씨	110605870- (유) 대산이앤씨
4	관리명	완성금(수준확량-전의지구)	
5	관리번호	0000678	



### 3. 사용자별 역할

현업사용자 : 정확한 정보관리항목 등록 및 업무 절차 준수를 통한 분개 전표 생성

결산담당자 : 결산조정분개, 원가계산, 내부거래 상계결과 검증 등을 통한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작성

#### 현업사용자의 역할 : 회계거래의 기록

- 사용자가 회계거래를 입력하면 시스템이 거래를 분석하여 계정 과목과 분개유형을 선택
  - 현업사용자의 지출요청, 계약요청 등 업무 수행시 dBrain 입력 사항에 의하여 분개가 자동으로 설정됨에 따라 업무처리 절차 준수 및 입력의 정확도 제고 필요
-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시행 이전에는 수납·지출·자산취득 등과 직접 관련된 사항만이 중요하였으나,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 시행으로 신뢰성 있는 분개전표 생성을 위한 사용자의 역할이 증대
  - 사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입력하거나, 정상적인 업무처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분개내역 및 재무제표에 오류 발생

○ 현업사용자의 분류별 역할과 업무오류 사례

현업사용자 구분	역 할	오류사례 및 비고
요청업무 수행 사용자 (집행단위담당자, 사업담당자)	① 요청 내역 등록시 각종 정보관리항목을 정확히 입력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수요청시 [해당시작일], [해당 종료일]을 잘못 입력할 경우 선수수익 결산조정분개에서 오류발생(금액계산 및 분개대상)</li> <li>- 지출요청시 [발생유형](일반, 부대비)에서 '부대비'를 '일반'으로 선택할 경우 계정과목 오류 및 자산 취득가 미반영</li> <li>- 차입시 [장단기 구분](장기, 단기)중 '장기'를 '단기'로 선택할 경우 잘못된 분개 전표 생성</li> </ul>
	② 업무처리 절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취득(계약)시 G2B(나라장터) 통하지 않고 대금 지급은 일반지출 자산등재는 기타증감으로 할 경우 잘못된 계정과목 및 정보관리항목으로 분개 전표 생성</li> <li>- 용자 집행 및 회수 업무를 자금(용자)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지출 수입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잘못된 계정과목 및 정보관리항목으로 분개 전표 생성</li> </ul>

○ 현업사용자의 dBrain을 이용하여 회계거래를 기록함에 따라 생성되는 산출물에는 분개전표, 총계정원장 및 시산표 등이 있음

- 분개전표: 회계거래에 대한 회계연도, 소관회계 등과 같은 공통적인 정보, 분개내역 및 추가적인 정보관리항목이 기록
- 분개장: 일자별로 분개 내역이 기록된 장부
- 총계정원장: 모든 계정과목의 분개내역이 집계·기록된 장부
- 시산표: 각 계정에 기록된 차변합계금액, 대변합계금액 및 잔액이 표시

○ 회계직공무원은 사업담당자의 요청 정보에 대한 정보관리항목 및 업무 처리 절차 준수 여부 검토 및 확인

## 결산담당자(재무제표 작성자)의 역할 : 결산업무 수행

- 재무제표는 장부마감 이후에 회계·기금별 중앙관서 중앙관서 통합(국가)의 단계별로 수행
  - 일선관서별 재무정보 취합 수정전 시산표 작성
  - 결산조정분개 수행 수정후 시산표
- \* , ,
- 프로그램별 원가계산(관리운영비·간접비 구분 및 간접비 배부)
- 중앙관서 취합 및 국가 결산시 내부거래 상계
- 결산담당자는 결산조정분개 및 원가계산 등에 필요한 상당한 수준의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에 대한 이해 요구

### <참고> dBrain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관련 산출물

구 분	내 용	
거래기록 대장(전표)	분개전표 및 분개장 총계정원장 및 보조원장 시산표(합계잔액시산표), 결산조정분개 내역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주석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등 8종
	필수보충정보	국세징수활동표 등 7종
	부속명세서	금융상품·미수채권·국공채·차입금명세서 등
	(붙임서류)	국유재산·물품·국가채권·국가채무보고서

## 4. 자동분개 등을 위한 팝업화면을 통한 정보입력

### 예산 세부항목 팝업화면을 통한 추가정보 입력

○ 예산과목과 계정과목 관계가 일대다(1:n)인 경우 종전에는 사용자가 직접 계정과목을 선택하였으나,

- 예산과목에 대한 세부항목 선택용 팝업화면을 도입하여 사용자가 세부항목을 선택할 경우 시스템이 계정과목을 자동으로 연계(Mapping)하도록 시스템 개선

- 관련 업무

수입업무: 징수요청, 납부서작성, 과목정정

지출업무: 지출요청, 과목정정, 용역계약요청, 지급요청 등

국유/물품업무: 취득요청\*, 매각요청, 대부사용수익요청 등

### <세출예산조회 팝업화면 예시>

3단계 : 확인 선택

1단계 : 예산과목 선택

2단계 : 세부항목/세세부항목 선택

**계정과목 확정**

목	세목	예산액	원인행위	원인행위액
1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28,681	3,108	25,573
2	[02] 광복요금 및 체세	0	0	0
3	[05] 특근매식비	8,000	1,960	6,040
4	[09] 지출장비유지비	8,400	6,836	1,564
5 [420] 건설비	[03] 시설투자	5,000	1,438	3,562

세부항목	세세부항목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1.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9	2. 통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10	3.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11	4. 물품의 보관료
12	5. 물품의 운송료
13	6.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14	8.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15	9. 광고료 및 광고료
16	11 업무와 관련하여 국내교육기관 위탁에 따른 공무원의 학자금, 학원수강료, 견학비
17	12 기타비용

[세부 항목] 12. 기타비용  
[세세부항목] -

17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 계정과목별 팝업화면을 통한 정보관리항목 등록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받기 위하여 일부 수입·지출업무 처리시 추가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 화면 도입

- 대상 업무 : 수입, 지출

### <정보관리항목 등록 팝업(지출)화면 예시>

**저장시 정보관리항목 팝업오른**

관리항목명	관리항목값	관리항목값명
1 계약계시일	2009-07-16	
2 계약완료일	2010-07-16	
3 해당시작일	2009-07-16	
4 해당종료일	2010-07-16	

**예산조회 팝업에서 선택된 세부항목에 따른 정보관리항목 입력**

**정보관리항목설명**  
 - 형식 : YYYYMMDD(예:20070101)  
 - 계약관련 거래의 계약시상 계



## 중앙재정 거래처 등록 방안 개선

- 중앙재정 거래처는 사용자의 등록기능을 폐지하고 현재 한국은행에 등록되어 있는 수입징수관 및 지출관 계좌를 일괄 등록
  - 일선회계관서 신규등록·수정·폐지시 거래처 자동 수정
  - 다만, 국고금 관리대상이 아닌 기금의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재무관)가 거래처를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
- 중앙재정 거래처는 거래처 등록화면에서 '내 관서추가'하여 사용

### <중앙재정 거래처 '내관서 추가' 방법>

#### ① 중앙재정 거래처 조회

**거래처구분 3-중앙행정기관 선택**

**소관/회계/계정 선택**

**관서에 등록된 거래처가 없는 경우 전체 거래처 현황에서 조회**

**관서에 등록할 거래처 선택 후 [내관서에추가] 버튼을 선택 하여 관서에 거래처 추가**

거래처코드	거래처명	거래처약칭명	거래처실명번호	거래처구분코드
282	140013218	국토부/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획재정국 재무과 지출	국토부/도봉구재무과 지출관	2178301406
283	140013219	국토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획재정국 재무과 지출	국토부/동대문구재무과 지출관	2048300037
284	140013220	국토부/서울특별시 동각구 재무과 지출관	국토부/동각구재무과 지출관	1088302004
285	140013221	국토부/서울특별시 마포구 기획재정국 재무과 지출	국토부/마포구재무과 지출관	1058300138

## ② 중앙재정 거래처 내관서 추가

**수정 불가 항목**

**수정 가능 항목**

- 거래처가 징수관인 경우 국고계좌 자동 추가
- 지출관 계좌 추가 안됨
- 민간기금 등은 계좌 추가 가능
- 민간기금 거래처 미조회 시 기준정보/회계팀에 추가 요청

계좌번호	금융기관	약어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실명번호	사용여부	예금주확인	CMS1번호
005762	0010000	국	한국은행	국토부/경기도 광명시	1338300244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금주 미확인	

## 중앙재정 회계 기금 간의 거래에 대한 업무통제

- 중앙재정 회계·기금 간의 거래인 예산과목 관련 업무에 대하여 거래처 입력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통제기능 도입
  - 사용자가 입력한 예산과목 등이 '정부간 예탁금' 등 특성상 중앙재정 회계·기금간에만 발생하는 거래일 경우에는
  - 거래처 구분입력시 통제기능을 도입하여 사용자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경고메시지 출력 및 수정후 진행하도록 조치



□ 수입 예산과목

관	관 명	항	항 명	목	목 명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1	전입금	911	일반회계전입금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1	전입금	912	기타특별회계전입금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1	전입금	913	기금전입금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1	전입금	914	비금융공기업전입금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1	전입금	915	타계정전입금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전입금	911	일반회계전입금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전입금	912	기타특별회계전입금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전입금	913	기금전입금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전입금	914	비금융공기업전입금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1	전입금	915	타계정전입금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4	예수금	941	일반회계예수금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4	예수금	942	기타특별회계예수금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4	예수금	943	기금예수금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4	예수금	944	비금융공기업예수금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4	예수금	945	타계정예수금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4	예수금	946	기타민간예수금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4	예수금	941	일반회계예수금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4	예수금	942	기타특별회계예수금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4	예수금	943	기금예수금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4	예수금	944	비금융공기업예수금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4	예수금	945	타계정예수금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4	예수금	946	기타민간예수금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2	예탁금원금회수	921	일반회계예탁원금회수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2	예탁금원금회수	922	기타특별회계예탁원금회수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2	예탁금원금회수	923	기금예탁원금회수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2	예탁금원금회수	924	비금융공기업예탁원금회수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2	예탁금원금회수	925	타계정예탁원금회수

관	관 명	항	항 명	목	목 명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2	예탁금원금회수	926	타회계전대차관원금회수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2	예탁금원금회수	927	기금전대차관원금회수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2	예탁금원금회수	921	일반회계예탁원금회수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2	예탁금원금회수	922	기타특별회계예탁원금회수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2	예탁금원금회수	923	기금예탁원금회수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2	예탁금원금회수	924	비금융공기업예탁원금회수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2	예탁금원금회수	925	타계정예탁원금회수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2	예탁금원금회수	926	타회계전대차관원금회수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2	예탁금원금회수	927	기금전대차관원금회수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5	예탁이자수입	951	일반회계예탁이자수입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5	예탁이자수입	952	기타특별회계예탁이자수입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5	예탁이자수입	953	기금예탁이자수입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5	예탁이자수입	954	비금융공기업예탁이자수입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5	예탁이자수입	955	타계정예탁이자수입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5	예탁이자수입	956	타회계전대차관이자수입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5	예탁이자수입	957	기금전대차관이자수입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5	예탁이자수입	951	일반회계예탁이자수입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5	예탁이자수입	952	기타특별회계예탁이자수입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5	예탁이자수입	953	기금예탁이자수입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5	예탁이자수입	954	비금융공기업예탁이자수입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5	예탁이자수입	955	타계정예탁이자수입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5	예탁이자수입	956	타회계전대차관이자수입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5	예탁이자수입	957	기금전대차관이자수입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6	기타	961	당기순이익전입금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6	기타	962	감가상각비전입금
14	수입대체경비수입	96	기타	963	제충당금전입금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6	기타	961	당기순이익전입금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6	기타	962	감가상각비전입금
4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6	기타	963	제충당금전입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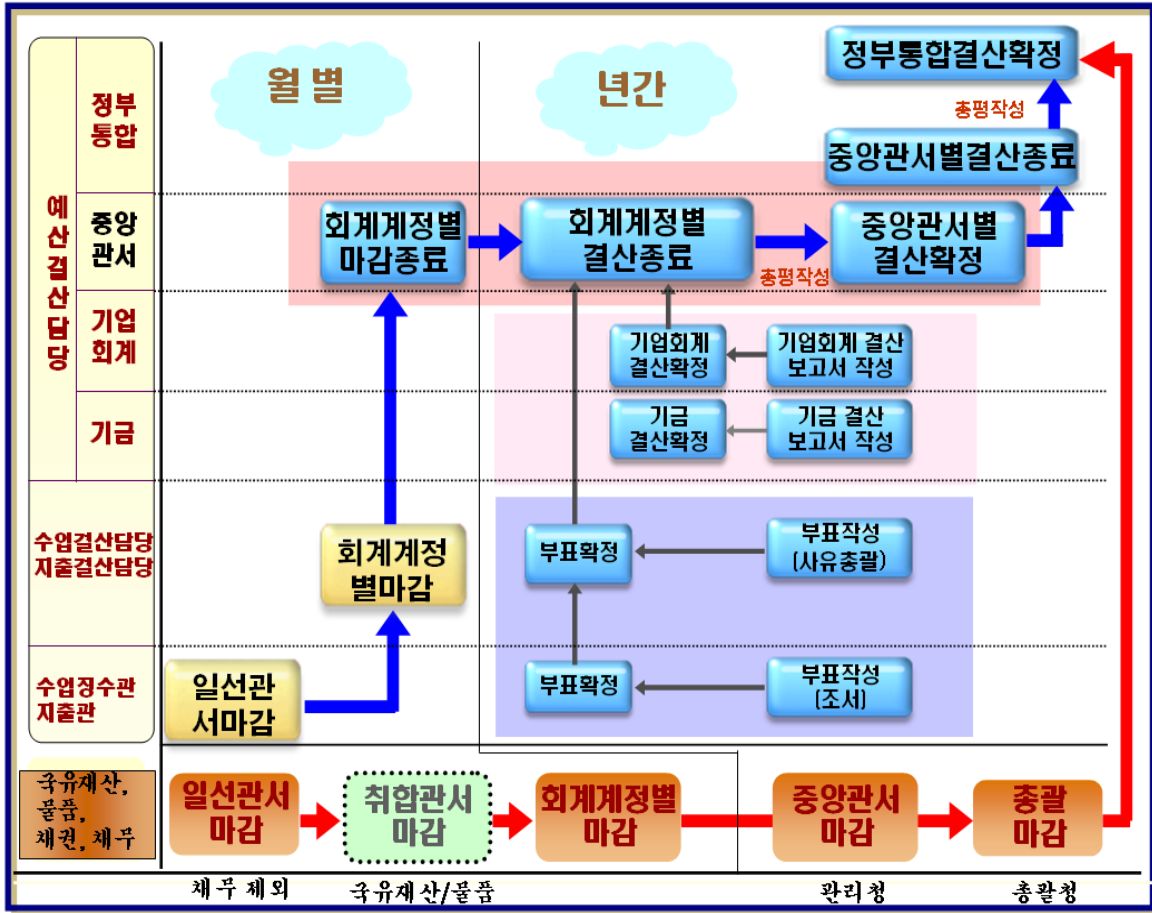
□ 지출 예산과목

목		세		세	세	세	세
		목		부	부	부	부
				항	항	항	항
				목	목	목	목
210	운영비	12	복리후생비	1. 기업회계등의 법정 복리비 및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공무원연금부담비		
210	운영비	12	복리후생비	1. 기업회계등의 법정 복리비 및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3. 군인연금부담비		
210	운영비	12	복리후생비	1. 기업회계등의 법정 복리비 및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7. 사학연금부담비		
450	융자금	01	비금융공기업융자금	1. 정부내예탁금	1. 단기(만기1년이내)		
450	융자금	01	비금융공기업융자금	1. 정부내예탁금	2. 장기(만기1년이상)		
480	예탁금	01	일반회계예탁금	1. 단기(만기1년이내)			
480	예탁금	01	일반회계예탁금	2. 장기(만기1년이상)			
480	예탁금	02	기타특별회계예탁금	1. 단기(만기1년이내)			
480	예탁금	02	기타특별회계예탁금	2. 장기(만기1년이상)			
480	예탁금	03	공공기금예탁금	1. 단기(만기1년이내)			
480	예탁금	03	공공기금예탁금	2. 장기(만기1년이상)			
510	상환지출	01	국내차입금상환	1. 부문간 차입금 원금상환	1. 단기(만기1년이내)		
510	상환지출	01	국내차입금상환	1. 부문간 차입금 원금상환	2. 장기(만기1년이상)		
510	상환지출	03	차입금이자	3. 이차지급	5. 정부내예수금관련		
510	상환지출	04	예수금원금상환	1. 정부내예수금원금상환	1. 단기(만기1년이내)		
510	상환지출	04	예수금원금상환	1. 정부내예수금원금상환	2. 장기(만기1년이상)		
510	상환지출	05	예수금이자상환	1. 정부내예수금이자상환			
510	상환지출	06	전대차관원금상환	1. 단기(만기1년이내)			

목		세		세		세	
목		세		세		세	
목		세		세		세	
510	상환지출	07	전대차관이자상환				
610	전출금 등	01	일반회계전출금		2. 이자지급		
610	전출금 등	02	기타특별회계전출금		1. 특별회계 및 기금이 일반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610	전출금 등	03	공공기금전출금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이 기타특별회계에 무상으로 주는 자금		
610	전출금 등	03	공공기금전출금		0. 군인연금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610	전출금 등	03	공공기금전출금		1. 공공기금에 대한 전출금		
610	전출금 등	03	공공기금전출금		3.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1. 연금보전금
610	전출금 등	03	공공기금전출금		3.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국가부담금		2. 연금부담비지급분 (행안부)
610	전출금 등	04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1. 부문간 거래로서 비금융공기업부문인 기업특별회계에 대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610	전출금 등	05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1. 부문간거래로서 비금융공기업 부문인 기업특별회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금 또는 전출금		
610	전출금 등	06	감가상각비		1. 기업회계 등의 고정자산 중 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기타 이연자산에 대한 상각비		
610	전출금 등	07	당기순이익		1. 기업회계등의 당기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		

## 6. 결산절차

### □ '08년 결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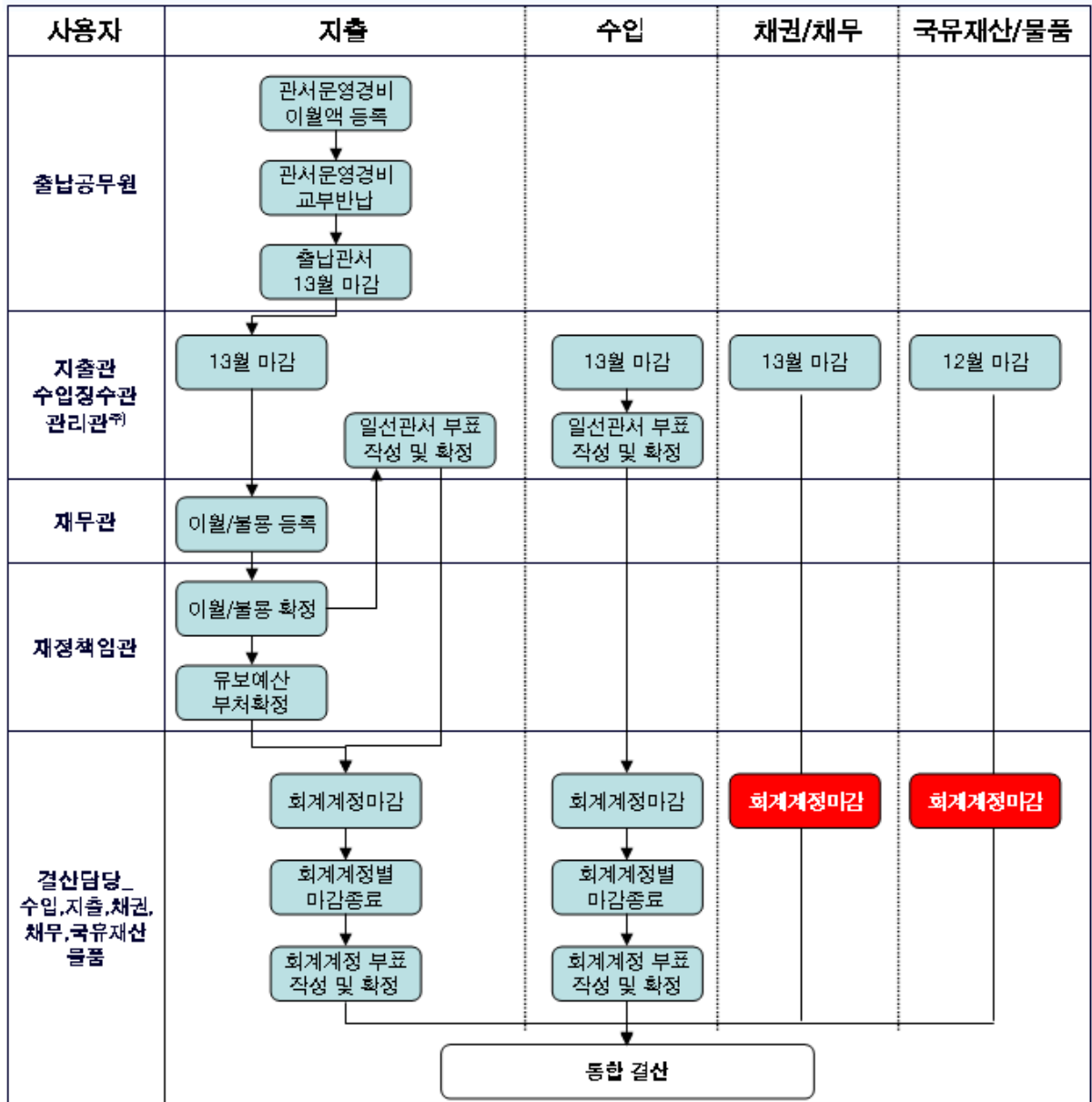
○ 채권, 채무, 국유재산, 물품 결산은 세입·세출결산(중양관서)과 분리 진행

- 중양관서별 결산보고서 제외 대상

- 채권, 채무, 국유재산, 물품의 결산 지연요인 상존( + 년마감)

□ 향후 재무결산 절차

○ 업무별 마감



주) 관리관 : 채권관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 , , [ ]

○

○



**참고 1**

**결산조정분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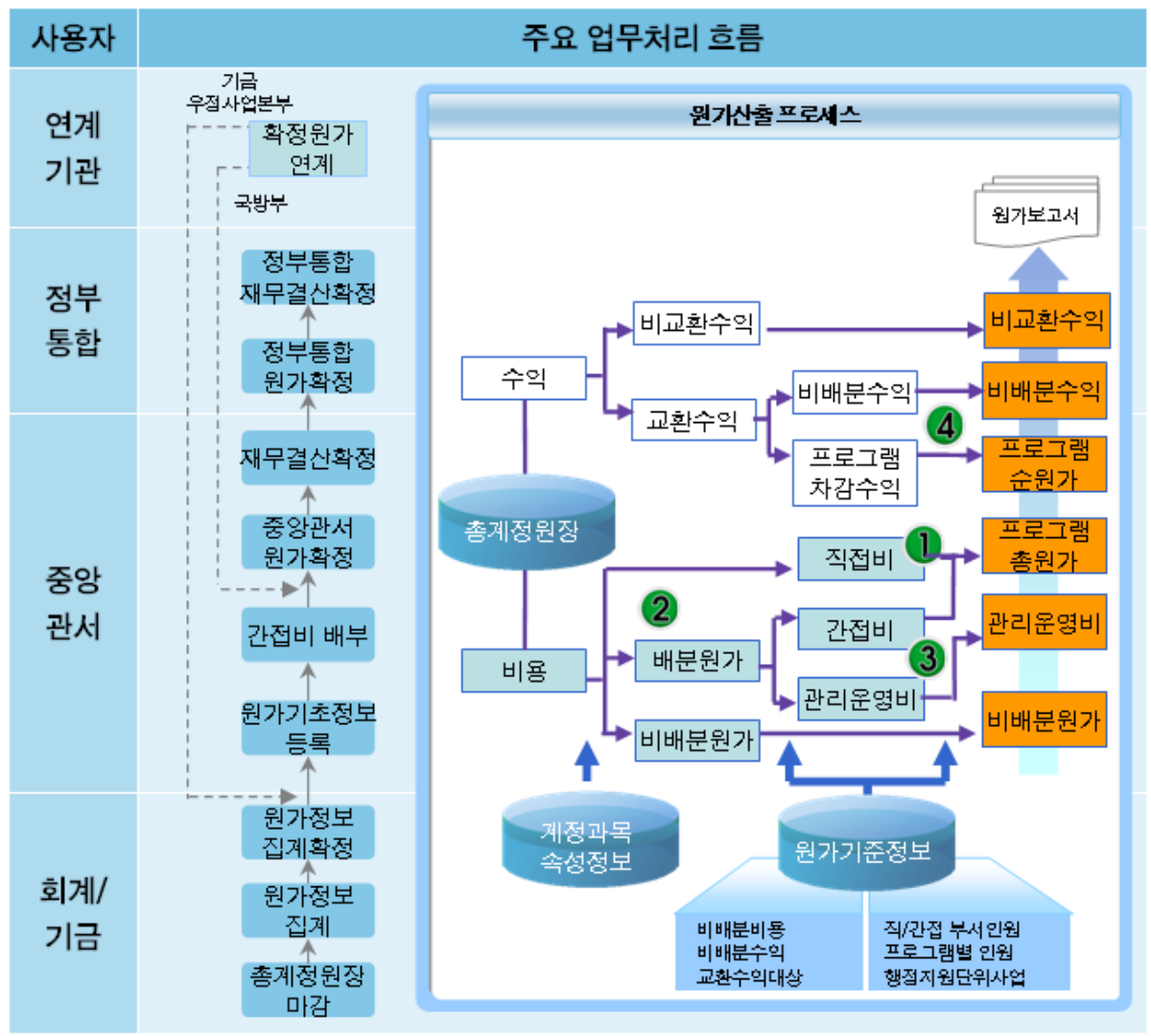
조정분개 유형	적용대상	비고
1. 감가상각비 산출	전체	
2. 사용수익권 환입	전체	
3. 대손충당금 설정	전체	
4. 미수수익 인식	전체	
5. 미지급비용 인식	전체	
6. 선급비용 인식	전체	
7. 선수수익 인식	전체	
8. 외화평가	전체	
9. 투자유가증권평가	일부	
10.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	일부	
11. 용자보조원가충당금	일부	
12. 매출원가 인식	일부	사용자 처리
13. 정부보험충당부채 설정	일부	사용자 처리
14. 퇴직급여충당금설정	전체	사용자 처리
15. 유동성대체	전체	
16. 정부연금충당부채 설정	전체	사용자 처리
17. 미수국세(미수국세 대손충당금)의 증감	일부	
18. 리스거래의 처리	일부	
19. 파생상품의 평가	일부	사용자 처리
20. 외국환평형기금의 환산	일부	사용자 처리
21. 복구충당부채 설정		유예
22. 반품충당부채 설정		유예
1. 비교환수익 대체(정부통합)	국가결산	
2. 국고금융여유자금운용액 대체	국가결산	
3. 국세수익 조정	국가결산	
4. 미수국세(미수국세 대손충당금)의 증감	국가결산	

\*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으로 처리되는 결산조정분개의 경우에도 대부분 사용자가 기본정보를 입력하여야 함



참고 2

원가계산



: ( )  
 ( ) ( ) ( )  
 ( )

## 7. 업무별 사용자 오류유형 및 재무제표 관련 입력요구사항 예시

### 지출업무

#### 사용자 입력오류 유형

업 무	정상절차	미준수 사례	영 향
용자 요청	용자 요청관리 징수 집행 지출요청관리	지출관리 요청관리 일반지출 지출요청(원인 행위) 화면에서 바로 작성	용자보조원가 충당금 미발생
해외차입	해외차입 비전대차관 차관상환관리 원리 금상환	지출관리 요청관리 일반지출 지출요청(원 인행위) 화면에서 바로 작성	외환차손익이 발생하지 않음 해외차입이 미상계
국내차입	국내차입 일반차입 상환요청 상환요청”	지출관리 요청관리 일반지출 지출요청(원 인행위) 화면에서 바로 작성	국내차입이 상계 되지 않음
공공자금 운용 지출	공공자금운용 예수 예수원리금상환 지출 요청	지출관리 요청관리 일반지출 지출요청(원 인행위) 화면에서 바로 작성	정보관리항목 누락
물품 취득 요청	조달(계약) 요청 물품 계약 구매요청(물품) 조달(계약) 대금청구 dBrain청구등록 대금청구등록	지출관리 요청관리 일반지출 지출요청(원 인행위) 화면에서 바로 작성	물품계정 대신 비 용 계정으로 처리 (자산 등재되지 않음) 미지급이 상계되지 않음
국유재산 취득 요청	조달(계약) 요청 물품 계약 취득요청(국유) 조달(계약) 대금청구 dBrain청구등록 대금청구등록	지출관리 요청관리 일반지출 지출요청(원 인행위) 화면에서 바로 작성	국유재산계정 대신 비용 계정으로 처리 (자산 미등재) 미지급이 상계되지 않음



[부대비 지출시 주의사항] : 지출요청(원인행위) 작성시 선택된 “발생 유형”에 따라 계정과목이 달라짐

[발생유형코드 종류] : 부대비 지출시 하단의 발생유형코드를 선택함에 따라서 계정과목이 달라지고 결국 재무결산에 영향을 미침

- ‘0 일반’ : 일반지출 건인 경우 선택, 부대비인 경우 선택하면 안됨
- ‘1 국유재산부대비(건설중인자산)’ : 해당 부대비가 아직 자산화 되지 않은 건설중인국유재산에 발생한 부대비인 경우 선택
- ‘2 물품부대비(건설중인자산)’ : 해당 부대비가 아직 자산화 되지 않은 건설중인물품에 발생한 부대비인 경우 선택
- ‘3 국유재산부대비(일반자산)’ : 해당 부대비가 이미 자산화 된 국유 재산에 발생한 부대비인 경우 선택
- ‘4 물품부대(일반자산)’ : 해당 부대비가 이미 자산화 된 물품에 발생한 부대비인 경우 선택
- ‘5 사전부대비’ : 해당 부대비가 계약만 된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선택 (아직 건설중이거나 자산화가 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

부대비 지출액은 비용처리 대신에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자산대장에 등재되어야 함

- 따라서 부대비 지출 처리 시 발생유형에 따라 계정과목이 결정 되고 해당 금액이 국유재산 물품 대장의 취득가액이 정확히 반영 되기 때문이다.

## 수입 및 채권업무

### 사용자 입력오류 유형

업 무	정상절차	미준수 사례	영 향
용자 회수	용자 요청관리 징수 요청(수작업) 징수내역 입력 및 요청 등의 절차로 수입징수 요청	수입관리 징수요청, 또는 고지관리 납부서 작성및출력 화면에서 작성	자동분개 오류 및 부속명세서 집계 오류 발생
차입 요청	국내차입 일반차입 차입요청 차입요청 화면에서 작성 후 수입으로 징수요청	수입관리 징수요청 또는 고지관리 납부서 작성및출력 화면에서 작성	자동분개 오류 및 부속명세서 집계 오류 발생
대여료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	국유재산 운용 대부/사용수익 징수요청 화면에서 작성 후 수입으로 징수요청	수입관리 고지관리 납부서작성및출력 화면에서 대여료-부가가치세징수를 선택해서 작성	계정과목이 사용료수익이 아닌 부가가치세징수로 생성 및 부속명세서 집계오류
매각대 (토지, 건물, 기계기구 등)	국유재산 처분 매각 징수요청 화면에서 작성 후 수입으로 징수요청	수입관리 고지관리 납부서작성및출력 화면에서 “매각대-Nafis연계 및 관리환처분에 의한 미수금 정산을 선택해서 작성	계정과목이 “기타의 미수금”으로 잘못 생성
불납결손	채권>채권마감>불납결손처분>불납결손처리신청내역등록	불납결손 미등록	자동분개 누락 및 부속명세서 집계 오류

## 자동분개 및 재무결산 관련 정보관리항목

### ① 징수요청

사업	0000 공통분야/공통부문/공통프로그램/공통단위사업		
채권발생일자	<input type="text"/>	요청일자	2008-12-08
건명	<input type="text"/>		
수입징수관	02-100404 노동부/일반회계/노동부 대구지방노동청 징수관		
징수관계좌번호	042123-0		
예산과목	07-38-381 사회보장기여금/사회보장기여금/고용주부담금		
계정과목	42050202 고용주부담금		
납부자명	<input type="text"/>	납부자실명번호	<input type="text"/>
납부자주소	<input type="text"/>		
<b>사용안내</b> - 납기내기한 경과 후에도 수납을 하시려면 납기내/후구분을 "납기무관"으로 선택하세요.			
납기내/후구분	납기내	요청금액	0
납기내기한	<input type="text"/>	가산(연체)율	%
가산(연체)과목	<input type="text"/>		
납기후기한	<input type="text"/>	납기후금액	0
부과근거(내역)	<input type="text"/>		
	* 한글 200 글자 이내, 영문 400 글자 이내		
산출근거1	<input type="text"/>		
산출근거2	<input type="text"/>		
산출근거3	<input type="text"/>		
고지발송방법	<input type="radio"/> 통합발송 <input checked="" type="radio"/> 자체발송	무송수단	직접수령

[채권발생일자] : 당년도 발생인데 채권발생일자를 과년도로 입력시 계정 과목이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변경

## ② 불납결손처리

웹 페이지 대화 상자

불납결손처리신청내역등록 [저장] [닫기]

소관	기획재정부	회계	일반회계
채권관리관서	경상남도 거제시 홀무국 세무과 채권관리관		
채권종류	교육세	채권번호	080908210149000011
발생금액	133,330	채권발생일	2008-09-04
소멸금액	0	이행기한	2008-12-17
현재액	133,330	시효완성예정일	2013-09-03
채무자명	거제시	실명번호	999999999
채무자구분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전화번호	055-639-3294
채무자주소	(656800) 경남 거제시 신현읍 고현리 717		
신청일	2008-12-11	등록자	OPCT01 전체사용자(채권)
불납결손사유	시효완성	불납결손신청금액	133,330
결손처리일	2008-12-11		
상세사유	시효완성으로 인한 불납결손		

※ 승인시 결손처리 완료됩니다. ※

http://dev.ifms.go.kr/ifmsweb/srcweb/ct/cx/npl/CtCxNplNpldealP.jsp?AUTH=1111111 인터넷

[결손처리일] : 결손처리일은 채권 수입결산시 해당 월로 결산되며 자동분개 시 회계전표일자 임.

# 국유재산 관리

## 사용자 입력오류 유형

업무	정상절차	미준수 사례	영 향
취득 및 수리	(조달) 요청 요청승인 (계약) 원인행위 검사/검수 지출요청 지출결의 계좌이체	(지출)일반지출요청 (국유재산)기타취득/증가	지출시 자산을 비용 으로 처리하고, 기타취득시 잡이익 으로 분개오류 발생
매각	[매각계약, 권리금회수, 환지매각, 공탁금수령] 매각(계약)요청 (계약) 징수요청 징수 결의 수납정산 인계 [유가증권매각]매각계약 요청 계약결과등록 -징수요청 징수결의 수납정산 인계	(수입)납부서:Nafis연계 및 관리환처분에 의한 미수금 정산 (국유재산) 기타처분	수입은 미수금으로 분개되고, 기타처 분시 잡손실로 분개 오류 발생
유상 관리환	관리환취득요청(협의통 보) 관리환결정(인계) 인수 징수요청 징 수결의 원인행위 지 출결의 계좌이체 수 납정산	[인계관서] (수입)납부서 & (국유재산)기타처분 [인수관서] (지출)일반 지출요청 & (국유재산) 기타취득	수입/지출/국유재산 각 전표간의 자료 정합성 미확보 내부거래 제거 대상 에서 누락됨
교환/ 환지	[교환/환지일부수령]교환 (계약)요청 (계약) 징수요청 징수결의 수납정산 검사 검수 [교환/환지일부지급] 교환 (계약)요청 (계약) 원 인행위 검사 검수 지 출요청 지출결의 계좌 이체	(수입)납부서 & (국유 재산)기타처분 (지출)일반지출요청 & (국유재산)기타취득	수입/지출/국유재산 각 전표간의 자료 정합성 미확보
사용료 수익	대부/사용수익(계약)요 청 계약 징수요청 징수결의 수납정산 인계	(수입)납부서 작성시 부가가치세를 잘못 선택	계정과목이 “사용료 수익”이 아닌 “부가 가치세징수”로 전 표생성





## <취득자산이 토지인 경우>

재산명세		저장	초기화	닫기	
취득사유	신규등록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	관리계획			
재산종류	토지	재산종목	일반토지	재산구분	행정재산(공공용/도로)
자산명		취득일자			
취득면적	0	단위	평방미터	취득금액	0
소재지		지번			
토지 취득시에는 동일한 소재지/지번이 존재하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복확인)					
면적(현황) (㎡)	0.00	지목(공부)	[지목코드(공부)]	지목(현황)	[지목코드(현황)]
사용주체	[사용주체]	사용상태	[사용상태]	도로번호	
공유면적 (㎡)	0.00	전체면적 (㎡)	0.00	지분	/ / 계산
활용가능	[활용가능]	측량일자		공유면적에 대한 지분입력 내용은 저장되지 않습니다(지분환산용)	
용도지역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자산번호	
특이사항					
사용수익권	0	사용기간	~	사용수익권상각방법	정액법
내역비고					

[재산종목, 재산구분] : 재산종목과 재산구분이 조합되어 COA 결정되며, 결정된 COA의 감가상각정보를 활용하여 감가상각 계산하며, 결산보고서(중요한 회계처리방법) 집계 자료로 활용됨.

[자산명, 취득일자, 취득면적, 소재지, 도로번호] : 분개전표의 정보관리 항목으로 자산 취득 관련한 정보임

[사용수익권, 사용기간] : 공공용재산(사회기반시설)인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 기간 동안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금액을 의미하여 사용수익권은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되며(장부가액=취득금액-사용수익권), 결산 조정분개 시 사용수익권환입 처리 자료로 사용됨 (사용수익 기간 동안 사용수익권을 상각하여 환입처리)

<취득자산이 유가증권인 경우>

재산명세				저장	초기화	닫기
취득사유	신규등록 외부에 의한 기반시설 취득			관리계획		
재산종류	유가증권	재산종목	장기/회사채	재산구분	잡종재산	
자산명				취득일자		
취득수량	0	단위	매	취득금액	0	
발행기관				기관설립일자		
기관주소				사채종류	일반사채	
보유목적				시장성여부	Yes	
액면가	0	기번호시작	0	기번호종료	0	
본자산번호				발행일자		
액면이자율 (%)	0	만기일자		만기일자		
특이사항						
사용수익권	0	사용기간		사용수익권상각방법	정액법	
내역비고						

[재산종목, 재산구분] : 재산종목과 재산구분이 조합되어 COA가 결정되며, COA에 따라 유가증권 평가 방법이 결정됨.

[자산명, 취득금액] : 분개전표의 정보관리항목으로 자산 취득 관련한 정보임

[발행기관] : 결산 시 내부거래 제거 기준 항목으로 사용됨

[액면가, 액면이자율, 시장성여부, 사채종류, 증권종류] : 결산 조정 분개 시 유가증권 평가기준 자료로 활용되며, 결산보고서 (계정과목별 부속명세서) 집계 자료로 활용됨.

[발행일자, 만기일자] : 결산 조정분개 시 유가증권 평가기준 자료로 활용 및 유동성대체 처리 자료로 사용됨

취득 자산의 재산종목 일부 사례(토지와 유가증권)만 예를 들어 설명함. 재산종목에 따라 정보관리항목들이 달라짐 조정분개 및 결산 보고서 작성지침 확정 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한 변경 및 추가가 예상됨





#### ④ 매각요청

매각요청서		도움말	닫기
<b>요청정보</b>			
프로그램	2007		
부서	[도시개발법]등에 의한 환지		
업무유형	환지매각(계획무·자체승인)		
목적	[도시개발법]등에 의한 환지		
건명	RQ2007122600046880		
요청일자	2007-12-26	진행상태	매각요청-승인
예산과목	12-59-596 경상이전수입/기타경상이전수입/기타경상이전수입		
재산관리자	[도시개발법]등에 의한 환지		
계약체결대상	아니오	계약방법	계약없음
거래처명	대산	실명번호	2222
분할납부구분	일시납	분할납부회수	1 회 기수납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계약보증금 0
기수납금액	60,000 ※ 이미 세입처리가 완료된 금액이 있는 경우 기수납여부 체크 후 기수납금액을 입력합니다.		
신청일자		신청자	
실명번호		전화번호	
신청자주소	-		
첨부파일			
비고			
업무담당자	간선	전화번호	02-741-1500
		이메일	lond...@...kr
<b>재산명세</b>			
상세 진행정보 재산평가			
자산명	소재지	지목	요청면적/수량
			요청금액
			재산평가금액
			대장면적/수량

[업무유형] : 자동분개 시(인계) 매각업무유형에 따라 정보관리항목 [증가 감소구분] (취득/자본적지출, 대체, 처분/폐기 등)이 결정되어 결산보고서 (계정과목별부속명세서) 집계 자료로 활용

[거래처명,실명번호] : 매각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업무는 요청서 작성시 거래처는필수 입력은 아니며, 계약에 의해 최종 계약자(거래처) 결정되어 정보관리항목으로 관리됨

[인계일자] : 인계일자는 국유재산 결산시 해당 월로 결산되며 자동 분개시 회계전표일자임

## ⑤ 대장관리

토지대장		토지대장출력	
<b>기본정보</b>			
대장번호	Z3000798A060001634	자산명	토지
재산관리자	02-263711 해양수산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해양수산부 재산관리관		지적, 지형도
프로그램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해양수산행정종합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기본경비(비총액)		
관리청	해양수산부	사유	기부채납
재산종목	임야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취득일자	2006-10-24	취득면적 (㎡)	266.00
정리일자	2006-10-24	대장면적 (㎡)	266.00
소재지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		지번 산 114-1
지목(공부)		지목(현황)	현황면적(㎡) 0
사용주체		사용실태	관리구분 직접관리
<b>등기정보</b>			
등기등록일		등기번호	등기기관
<b>전소유자정보</b>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b>기타정보</b>			
일단의면적	0	공유여부/공유면적(㎡)	N 0.00
활용가능		측량일자	도로번호
용도지역코드		도시계획시설	자산그룹
사용수익권(원)	0	사용수익권 설정기간	~
사용수익권 설정기관			평가손익금액 0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증감현황</span> <span><b>공시지가</b></span> <span>운용현황</span> <span>소송현황</span> <span>감정평가</span> <span><b>보험정보</b></span> <span>이미지</span> <span>실태조사</span> </div>			
기준년도	구분	소재지	면적
			공시지가
			비고

[공시지가] : 결산보고서 부속명세서[보유토지의 공시지가] 자료에 이용

[보험정보] : 결산보고서 주석[보험가입자산] 자료에 활용

## 물품 관리

### 사용자 입력오류 유형

업무	정상절차	미준수 사례	영 향
취득 및 수리	(조달) 요청-요청승인-(계약)-원인행위-검사/검수-지출요청-지출결의-계좌이체	(지출)일반지출요청 & (국유재산)기타취득/증가	지출시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기타취득시 발생하지 않은 잡이익 처리
매각	[매각계약] 매각(계약)요청-(계약)-징수요청-징수결의-수납정산-인계	(수입)납부서 & (물품)기타처분	수입은 미수금으로 분개, 기타처분시 발생하지 않은 잡손실 처리
유상관리 전환	관리환취득요청(협의통보)-관리환결정(인계)-인수-징수요청-징수결의-원인행위-지출결의-계좌이체-수납정산	[인계관서] (수입)납부서 & (국유재산)기타처분 [인수관서] (지출)일반지출요청 & (물품)기타취득	수입/지출/물품 각각의 전표간의 자료정합성 미확보 내부거래 제거 대상에서 누락
대부	대부(계약)요청-계약-징수요청-징수결의-수납정산-인계	(수입)납부서	정보관리항목(해당시작일, 해당종료일)누락으로 선수수익 결산조정분개 대상 제외



## 자동분개 및 재무결산 관련 정보관리

### ① 기타증감처리

[사유] : 기타증감의 사유에 따라 자동분개 유형(계정과목)과 정보관리 항목 [증가감소구분](취득/자본적지출, 대체, 처분/폐기 등)이 결정되어 결산 보고서 (계정과목별부속명세서) 집계 자료로 활용

[정리일자] : 물품 결산 시 해당 월로 결산되며, 자동분개시 회계전표 일자 임.

[거래처코드] : 사유에 따라 필수 입력 여부가 결정되며, 분개전표의 정보관리항목으로 자산의 취득/처분 거래처임

[건명] : 분개전표의 정보관리항목으로 관리됨

구매물품정보		저장	닫기
분류번호	<input type="text"/>	식별번호	<input type="text"/>
자산명	<input type="text"/>		
요청수량	<input type="text" value="0"/>	단위	[단위] ▼
예산단가	<input type="text" value="0"/>	금액	<input type="text"/>
납품기한	<input type="text"/>	납품장소	<input type="text"/>
인도조건	[인도조건] ▼	허용률	<input type="text" value="0"/>
기능	[기능] ▼	용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
운영조직	<input type="text"/>	운영부서	<input type="text"/>
물품상태	신 품 ▼		
물품용도	<input type="text"/>		
비고	<input type="text"/>		
물품품종	이동성기계장치 ▼		
취득일자	<input type="text"/>		

※ 기타취득의 경우 품종을 대장등재 대상만 선택 가능

[분류번호, 식별번호, 품종] : 품종에 따라 COA가 결정되며, 분류번호 별로 정의된 내용년수와 소관/회계별 관리하고 있는 감가상각정보를 이용하여 감가상각 계산 및 결산보고서 (중요한 회계처리방법) 집계 자료로 활용됨.

[취득일자] : 분개전표의 정보관리항목으로 자산 취득 관련한 정보임

## ② 관리 전환취득요청

The screenshot shows a web-based form titled '관리전환요청서' (Management Transfer Request Form). The form is divided into sections: '요청정보' (Request Information) and '물품명세' (Item Details). In the '요청정보' section, several fields are highlighted with red boxes: '업무유형' (Business Type) is set to '유상관리전환' (Paid Management Transfer); '상대자' (Counterparty) is an empty text field; '국고외 거래처' (Non-Treasury Transaction Counterparty) is set to '상위기관에서 배정받은금액' (Amount Assigned from Higher Authority). Other visible fields include '프로그램' (2008), '부서' (Department), '물품사유' (Item Reason: 조달청장시정요구), '요청일자' (Request Date), '예산과목' (Budget Item), '계정과목' (Account Item), '취득물품관리자' (Acquisition Item Manager), '처분물품관리자' (Disposal Item Manager), '요청수량(합계)' (Request Quantity (Total): 0), '요청금액(합계)' (Request Amount (Total): 0), '첨부파일' (Attachments), '사유' (Reason), '업무담당자' (Business Officer), and '전화번호' (051-410-1021). The '물품명세' section at the bottom has a table with columns for '자산명' (Asset Name), '대장수량' (Inventory Quantity), '요청수량' (Request Quantity), '대장금액' (Inventory Amount), '요청금액' (Request Amount), '평가금액' (Evaluation Amount), '국고외금액' (Non-Treasury Amount), and '대장번호' (Inventory Number).

[업무유형] : 유상과 무상 구분에 따라 자동분개 유형이 결정되고 업무 유형에 따라 정보관리항목 [증가감소구분](취득/자본적지출, 대체, 처분/폐기 등)이 결정되어 결산보고서(계정과목별부속명세서) 집계 자료로 활용

[상대자] : 결산시 내부거래 제거 기준 항목으로 사용됨

[국고외거래처, 국고외금외합계] : 유상관리전환인 경우 국고외금액 구분에 따라 계정과목이 결정됨. (기성회계등의 국고외금액이 포함되어 진행되는 경우는 해당금액 만큼 정부외기부금 계정과목으로 분개되며, 상위기관에서 하위기관으로 예산이 선 집행되고 하위기관에서 해당 예산으로 관리환취득을 할 경우 선급금으로 분개함.)

[인수일자] : 인수일자는 물품 결산 시 해당 월로 결산되며 자동분개시 회계전표일자 임

### ③ 대부요청

**대부요청서** [저장] [초기화] [도움말] [닫기]

**요청정보**

프로그램 [데이터가 없습니다.]

부서 05-700625 해양수산부/전체회계/해양수산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

업무유형 무상대부

건명

**예산과목** 11-51-513 재산수입/관유물대여료/기타관유물대여료

계정과목 41010301 사용료수익

물품관리자 선택

계약담당공무원 [관리관을 선택하십시오]

신청일자 [ ] **신청자** [ ]

실명번호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신청자주소 [ ]

**대부기간** [ ] ~ [ ] 계약방법 일반경쟁

첨부파일 [첨부] [삭제]

비고

업무담당자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요청합계금액 0 **일괄적용** 일괄적용버튼을 클릭하면 평가금액과 요청금액이 대장금액의 비율로 자동계산됩니다.

**물품명세** Excellimport

[상세] [추가] [삭제]

품명	규격	대장금액(원)	평가금액(원)	요청금액(원)	신청용도
----	----	---------	---------	---------	------

[신청자] : 요청서 작성시 신청자는 필수 입력은 아니나, 계약에 의해 계약자(거래처)로 결정되어 정보관리항목으로 관리됨

[대부기간] : 결산 조정분개 시 선수수익 처리 자료로 활용

#### ④ 매각요청

**매각계약요청서** [저장] [초기화] [도움말] [닫기]

**요청정보**

프로그램 2008 [데이터가 없습니다.]

건명

예산과목 13-69-691 재화및용역판매수입/잡수입/기타잡수입

물품관리자

계약담당공무원 선택

계약체결대상 예 OnBid 계약방법 선택

신청일자 신청자

실명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신청자주소

첨부파일 첨부 삭제

비고

업무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계약요청합계금액 0 일괄적용 계약요청합계금액을 물품별로 대장가액비율로 배분합니다.

**물품명세** 추가 삭제 상세

자산명	대장수량	대장금액	계약요청수량	계약요청금액	대장번호	분류번호
-----	------	------	--------	--------	------	------

[신청자] : 매각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업무는 요청서 작성시 거래처는 필수 입력은 아니며, 계약에 의해 최종 계약자(거래처)가 결정되어 정보관리항목으로 관리됨.

[인계일자] : 인계일자는 물품 결산 시 해당 월로 결산되며 자동분개 시 회계전표일자 임. 또한 자동분개 시(인계) 매각에 해당하는 정보관리항목 [증가감소구분] (취득/자본적지출, 대체, 처분/폐기 등)이 결정되어 결산 보고서 (계정과목별부속명세서) 집계 자료로 활용됨.

## ⑤ 대장관리

자산번호		941061000000045840	
분류번호	43171803	워크스테이션및데스크탑컴퓨터	
식별번호	20181831	유선	
자산명	통신컴퓨터장비, 주변기기, 부품및용품		
물품용도	직접입력1		
품종	사무용기기	10품종	
단위	개	취득수량	1
취득단가	21,000	대장수량	1
취득금액	21,000	대장금액	21,000
취득일자	2006-10-28	정리일자	2006-10-28
취득사유	0405 취득/조달구입		
프로그램	농림해양수산 / 해양수산-어촌 / 해양수산행정종합지원 / 소속기관 기본경비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기본경비(비)		
물품관리관	03000171 03-000171 농림부/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구조개선사업계정/농림부 국립종자관리소 물품관리관		
행정관서	05700405 05-700405 해양수산부/전체회계/해양수산부		
운영조직	1520593 해양수산부 포함지방해양수산청 영덕수산물기술관리소		
운영부서	0808		
사용위치	직접입력2	물품담당자	직접입력3
국내외구분	국내	국가코드	KR 대한민국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2px;"> <span>부속물내역</span> <span>증감현황</span> <span>운용현황</span> <span>이미지</span> <span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2px;">보험정보</span> </div>			
보험번호		보험명	
보험종류		시작일	
종료일		부보금액	
보험기관명			

- [보험정보] : 결산보고서 주식[보험가입자산] 자료에 이용되며, 조달관리 오픈에 따라 보험계약은 조달에서 진행 하여 처리하여야 함

## 조달관리

### 사용자 입력오류 유형

업무	정상절차	미준수 사례	영 향
선급금 지급	요청 계약 원인 행위 대금청구(선급) 지출 요청 지출결의 계좌 이체	일반지출요청->지출 처리후 (물품/국유) 기타자산증감	선급금(건설중인 자산) 인식이 안 되고 비용으로 인식
구매/ 취득	취득/구매요청(물품/국 유) 계약 원인행위 검사/검수 지출요청 지출결의 계좌이체	일반지출요청->지출 처리후 기타자산증감 (물품/국유)	자동분개 오류로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되는오류발생
리스계약	구매요청(물품)(리스구 분) 계약 원인행위 검사/검수 지출요청 지출결의 계좌이체	일반지출요청->지출 처리	금융리스부채인식 이 안되고 비용으 로 처리되는 오류 (리스부속명세서 및 재무제표오류)
공사계약	공사요청(국유/용역) 계약 원인행위 검사/ 검수 지출요청 지출 결의 계좌이체	일반지출요청->지출 처리후 기타자산증감 (물품/국유)	자동분개 오류로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되는오류
용역계약	용역계약요청 계약 원인행위 검사 지출 요청 지출결의 계좌 이체	일반지출요청->지출 처리	자동분개 오류로 일부계약에서 자산 (무체재산)을 비용 으로 처리되는오류
수리/폐기 계약	수리/폐기요청(물품/국 유) 계약 원인행위 검사/검수 지출요청 지출결의 계좌이체	일반지출요청->지출 처리 후 기타자산증감 (자본적 지출일 경우)	자본적지출일 경우 본자산 장부가액을 가산이 정확하게 안될수 있음(부속 명세서 및 재무제 표오류)
기타계약	부동산취득요청(무체 재산, 유가증권, 임차, 보험) 계약 원인행위 검사/검수 지출요청 지출결의 계좌이체	일반지출요청->지출 처리 후 기타자산증감	무체 재산, 유가증 권이 과소하게 계상 되거나 임차료와 보험료에 대한 선 급임차료 계산이 곤란(부속명세서 오류, 결산조정분개 불가)

## 자동분개 및 재무결산 관련 정보관리항목

### ① 구매요청(물품)

#### - 요청단계

물품명세(요청) -- 웹 페이지 대화 상자

물품명세(요청)

분류번호: 25101802    분류명: 모터스쿠터  
 식별번호: 10004223    규격명: 배기량49CC 무단변속 탱크용량4.8ℓ 공냉식  
 자산명: 배기량49CC 무단변속 탱크용량4.8ℓ 공냉식  
 요청수량: 2 개    요청단가: 250,000    요청금액: 500,000  
 품종: 이동성기계장치 ※ [부속물]은 분배 처리    리스구분: [선택]  
 납품기한:    납품장소:    허용율: 0.00    인도조건: [선택]  
 기능: [데이터가 없습니다.]    용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예산명세    \* 국외외금액 : 기성회계 등 국외예산이 아닌 금액, 타사업비: 타 부처에서 지원받는 금액 등

구분	목/세목	예산구분	금액	담당자
1	배정예산 운영비/기타운영비	일반예산	500,000	02-000408 국회/일반회계/국회 국회도서관 물품

- [분류번호, 식별번호, 품종] : 품종에 따라 COA가 결정되며, 분류번호별로 정의된 내용년수와 소관/회계별 관리하고 있는 감가상각정보를 이용하여 감가상각 계산 및 결산보고서(중요한 회계처리방법) 집계 자료로 활용
- [요청금액] : 대장등재시 수량에 따라서 각 물품의 취득가액이 되는 항목



- 검수단계

**검수\_물품**

검수번호	2008111052500	건명	[유통과] 전자복사기 원고자동이송장치 구매 검수조서
계약번호	240836088700	일괄구매	<input type="radio"/> Yes <input checked="" type="radio"/> No(자동출급)
계약금액	836,000	기검수총액	0
계약일자	2008-11-05	납품일자	2008-11-11
납품기한	2008-11-15	검사요청일	2008-11-11
지체상금율	0	지체일수	0
유보율	0.00	유보금액	0
거래처	2188100328 (주)신도리코	검수요청금액	836,000
리스거래처		금회검수금액	836,100
검사일자	2008-11-17	선금청산금액	0
검사자	미정민	지체상금	0
검사자의견	검사이상없음	감가액	0
검수일자	2008-11-17	지출결정액	836,100
검수자	미정민	자체대금청구	<input type="radio"/> Yes <input checked="" type="radio"/> No

**물품명세**

분류번호	44101501	분류명	복사기
식별번호	20499122	규격명	전자복사기, (옵션)RADF+Duflex, 디지털용
자산명	전자복사기, (옵션)RADF+Duflex, 디지털용	자산번호	
요청수량	1	요청금액	836,000
수량	1 개	금액	836,000
부대비	0	배부	0
품종	사무용기기	취득금액	836,000
계정과목	13010802 사무용기기	내용연수	
가능	[데이터가 없습니다.]	응도	[데이터가 없습니다.]
리스구분	[리스구분]	물품용도	수사용
비고			
출급부서	05-700764 대통령비서실/전체회계/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		
운영조직	1541287		
운영부서	0201		
사용위치	원산지수사실		

**부속물분배(물품)**

분류번호	44101501	분류명	
식별번호	20499122	규격명	전자복사기, (옵션)RADF+Duflex, 디지털용
부속물명	전자복사기, (옵션)RADF+Duflex, 디지털용		
부속물수량	1	금액	836,000
분배수량합계	0	※부속물 수량 만큼 모두 분배되어야 합니다.	

**검수연번선택**

연번	품종	자산명	검수수량	검수금액
1	사무용기기	Keithley, US/486, 2nA ~ 2mA, Digital Picoammeter	10	100

- [품종] : 품종에 따라 COA가 결정되며, 대장등재시 일반물품, 부속물과 대장반영여부를 정하는 항목
- [취득금액] : 금액과 수량 정보에 의하여 자동 설정되며 최초 취득시 취득금액이 대장금액으로 반영되며, 부대비도 취득금액에 포함

## ② 공사요청(국유)

### - 요청단계

**공사요청서**

요청번호: MP2008120900066353 | 건명: 공사요청(국유)  
 요청일자: 2008-12-09 | 업무구분: 국유재산 | 진행상태: 요청-기안전  
 계약체결구분: G2B(전자계약) | 조달유형: 자체 | 계약방법: 일반경쟁

---

**건물명세(요청)**

취득사유: 매입/매입 | 관리계획: 200805160000003471  
**재산종목: 사무소** |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 분자산번호:   
 자산명: 청사공사요청  
 소재지: 1111010400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동 | 560 - 15 | 기타주소:   
 (연)면적: 100 | 단위: 평방미터 | **요청금액: 60,000,000**  
 바닥면적 (㎡): 560.00 | 지상층수: 3 | 지하층수: 1  
 사용주체: 국가 | 사용상태: 청사 | 활용가능: 활용중  
 준공일자: 2008-12-09 | 용도지역: [용도지역] |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시공업자명: |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지붕형태: 목조지붕틀 시멘트  
 토지소유자명: | 특이사항:   
 ※ 국외금액 : 기성회계 등 국외예산이 아닌 금액, 타사업비: 타 부처에서 지원받는 금액 등

**예산명세**

구분	목/세목	예산구분	금액	담당자
1	배정예산 인건비/일용임금	일반예산	60,000,000	02-000106 대통령비서실/일반회계/대통령비서실

http://dev.ifms.go.kr/ifmsweb/srcweb/mp/qm/cmm/MpQmCmmAstBldgMP.jsp?P\_PAGE\_TYPE=NEW. 인터넷

- [재산종목, 재산구분] : 재산종목과 재산구분이 조합되어 COA가 결정되며, COA의 감가상각정보에 의하여 감가상각 계산과 결산보고서(중요한 회계처리방법) 집계 자료로 활용
- [요청금액] : 검수시 취득금액으로 반영됨.



- [재산종목, 재산구분] : 재산종목과 재산구분이 조합되어 COA가 결정되며, COA의 감가상각정보를 활용하여 감가상각 계산 및 결산보고서(중요한 회계처리방법) 집계 자료로 활용됨
- [금액] : 대장등재시 취득금액으로 반영되며 감가상각비 산출 자료로 이용
- [부대비배부] : 건물 공사계약시 부대비 성격으로 발생한 용역계약(전기, 설비, 소방공사용역)의 정보에 따라서 취득금액에 반영
- [검수일자] : 대장등재시 취득일자로 반영되며 결산시 취득시점 계산 감가상각시 상각기간 등에 활용
- [부대비배부] : 건물 공사계약시 부대비 성격으로 발생한 용역계약(전기, 설비, 소방공사용역)의 정보에 따라서 취득금액에 반영

### ③ 폐기요청(국유)

#### - 요청단계

폐기/철거요청서(국유) -- 웹 페이지 대화 상자

폐기/철거요청서(국유) [저장] [삭제] [기안] [요청서출력] [닫기]

요청번호	MP2008120900066355	건명	폐기요청(국유)		
요청일자	2008-12-09	업무구분	국유재산	진행상태	요청-기안전
계약체결구분	G2B(전자계약)	조달유형	자체	계약방법	일반경쟁
요청부서	05-700766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

-- 웹 페이지 대화 상자

건물대장 [건물대장출력] [닫기]

> 기본정보

대장번호	02000106B080012831	자산명	궁정동 9999-33	등기부조회	
재산관리자	02-000106 대통령비서실/일반회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재산관리관			지적, 지형도	
프로그램					
관리청	대통령비서실	사유	교환(유상)/일부지급	계정과목	건물
재산종목	창고	재산구분	잡종재산		
취득일자	2008-01-23	취득 면면적 (㎡)	100.00	취득금액 (원)	990,000
정리일자	2008-01-23	대장면적 (㎡)	100.00	대장금액 (원)	990,000
소재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궁정동				
지상층수	1	지하층수	0	지번	9999-33
사용주체	국가	사용상태	청사	바닥면적 (㎡)	100.00
				관리구분	직접관리

> 등기정보

등기등록일	등기번호	등기기관
-------	------	------

> 전소유자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 기타정보

시공업자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붕형태	슬라브	
준공일자	2008-01-01	활용가능	활용중	토지소유자	
물가배수부분	도로번호			자산그룹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내용년수(년)	50	감가상각누계액	0

- [대장금액, 감가상각누계액] : 취득금액에서 감가상각이나 증액이 반영된 현재 재산의 금액

#### ④ 수리요청(자본적 지출)

##### - 요청단계

The image shows two screenshots from a web application. The top screenshot is the '수리요청서(국유)' form. The bottom screenshot is the '건물대장' table.

**수리요청서(국유) Form Data:**

요청번호	MP2008120900066361	건명	수리요청(국유재산)		
요청일자	2008-12-09	업무구분	국유재산	진행상태	요청-기안전
계약체결구분	G2B(전자계약)	조달유형	자체	계약방법	일반경쟁
요청부서	05-700766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재산관리관	02-000106 대통령비서실/일반회계 /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재산관리관				
계약담당공무원	07-004155 대통령비서실/일반회계 / 대통령비서실 계약관				
재무관	01-000103 대통령비서실/일반회계/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재무관				
검사부서	05-700766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검사자			
업무담당자	배기환	전화번호	02-770-2123	이메일	bkh@cwd.go.kr
비고					
첨부파일					
프로그램	2008 2008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대통령비서실 운영 / 기본경비 / 기본경비				
대표예산과목	210-09 운영비/시설장비유지비	예산상세	대표계정과목 구축물수선유지비		
요청금액	6,400,000	일괄적용	지출구분	자산증액(자본적지출)	일괄적용

**건물대장 Table Data:**

기본정보					
대장번호	02000106B080013661	자산명	일호건물	등기부조회	
재산관리자	02-000106 대통령비서실/일반회계 /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실 재산관리관			지적, 지형도	
프로그램	일반공공행정 / 일반행정 / 대통령비서실 운영 / 기본경비 / 기본경비				
관리청	대통령비서실	사유	매입	계정과목	건물
재산종목	창고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취득일자	2008-11-24	취득 면면적 (㎡)	100.00	취득금액 (원)	52,000
정리일자	2008-11-24	대장면적 (㎡)	100.00	대장금액 (원)	52,000

- [요청금액] : 수리요청의 수리금액으로 지출구분이 자본적지출인 경우 수리금액만큼 대장금액(증가)과 취득금액(증가)에 반영이 됨
- [지출구분] : 수익적지출을 선택하는 경우 비용처리로 되며, 자본적지출인 경우 자산가증액이 됨.
- [취득금액, 대장금액] : 지출구분(자본적지출인 경우)과 수리금액에 따라서 변경

# 자금관리

## 사용자 입력오류 유형

업무	정상절차	미준수 사례	영 향
국고금 운용회수	국고금운용 운용관리 국고금운용관리 회수결의내역조회 화면 에서 전자결재 승인후 [정리] 버튼 누른다	국고금운용 운용관리 국고금운용관리 회수결의내역조회 화면 에서 전자결재 승인후 [정리] 버튼 누르지 않는다	- 자동분개 누락
용자집행	용자 요청관리 용자 집행 지출요청관리 화면에서 작성후 지출 에서 원인행위 작성	지출관리 요청관리 일반지출 지출요청(원 인행위) 화면에서 작성	- 정보관리항목누락 - 부속명세서 누락 (대여금명세서) - 대장자료 부재로 결산조정분개불가
용자회수	용자 요청관리 징수 요청(수작업) 징수내 역 입력 및 요청 등의 절 차로 수입으로 징수요청	수입관리 징수요청, 또는 고지관리 납부서 작성및출력 화면에서 작성	- 정보관리항목누락 - 부속명세서 누락 (대여금명세서) - 대장자료 부재로 결산조정분개불가
국내차입 요청	국내차입 일반차입 차입요청 차입요청 화면에서 작성후 수입 으로 징수요청	수입관리 징수요청, 또는 고지관리 납부서 작성및출력 화면에서 작성	- 정보관리항목누락 - 부속명세서 누락 (차입금명세서) - 대장자료 부재로 결산조정분개불가
국내차입 상환요청	국내차입 일반차입 상환요청 상환요청 화면에서 작성후 지출 에서 원인행위 작성	지출관리 요청관리 일반지출 지출요청(원 인행위) 화면에서 작성	- 정보관리항목누락 - 부속명세서 누락 (차입금명세서) - 대장자료 부재로 결산조정분개불가

업무	정상절차	미준수 사례	영 향
국공채 인수	공공자금운용 국공채 국공채인수 지출요 청 지출요청서(국공채 인수) 화면에서 작성후 지출에서 원인행위 작성	지출관리 요청관리 일반지출 지출요청(원 인행위) 화면에서 작성	- 정보관리항목누락 - 부속명세서 누락 (국채및공채명세서) - 대장자료 부재로 결산조정분개불가
국공채 원리금 회수	공공자금운용 국공채 국공채원리금회수 징수요청 국공채 원리금 징수요청서 화면에서 작성후 수입 으로 징수요청	수입관리 징수요청, 또는 고지관리 납부서 작성및출력 화면에서 작성	- 정보관리항목누락 - 부속명세서 누락 (국채및공채명세서) - 대장자료 부재로 결산조정분개불가
기금여유 자금 예치결의	기금여유자금운용 예적금운용 예적금상 품관리 예적금상품 예적금약정예치관리 약정체결 예치결의 화면에서 작성후 지출 에서 원인행위 작성	지출관리 요청관리 일반지출 지출요청 (원인행위) 화면에서 작성	- 정보관리항목누락 - 부속명세서 누락 (금융상품명세서) - 대장자료 부재로 결산조정분개불가
기금여유 자금 원리금 회수결의	기금여유자금운용 예적금운용 예적금 원리금관리 원리금 회수결의 화면에서 작성한 후 수입에서 징수요청	수입관리 징수요청, 또는 고지관리 납부서 작성및출력 화면에서 작성	- 정보관리항목누락 - 부속명세서 누락 (금융상품명세서) - 대장자료 부재로 결산조정분개불가



## 자동분개 및 재무결산 관련 정보관리항목

### ① 용자약정등록

· [예산과목] : 원금계정과목, 이자회수 계정과목 등에 따라 계정과목 결정

### ② 국내차입약정

· [장단기구분] : 일반차입약정시 장단기구분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계정과목 결정

## 지출요청서(국공채인수)

지출요청서(국공채인수)		요청	초기화	도움말	닫기
<b>지출요청정보</b>					
회계연도	2008				
자금관서	06-054348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자금관서				
재무관	06-100736 기획재정부/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계정/기획재정부 국고국 국고과 재무관				
건명					
<b>국공채인수정보</b>					
채권코드	6410 지방채 제주시(하천정비)	계좌번호	0101166475		
인수일자	2008-12-11	만기일자	2023-12-09		
인수금액	10,000,000,000	금리구분	<input type="radio"/> 변동 <input checked="" type="radio"/> 고정		
이자율	4.3	가산금리	0		
원금상환회수방식 <input type="radio"/> 만기일시 <input checked="" type="radio"/> 원금분할					
거치기간	60 개월	회수기간	120개월		
이자계산방식	<input type="radio"/> 분기말 <input checked="" type="radio"/> 고정일(단리)	이자계산구간	6개월		
닫기					

- [거치/회수기간] : 국공채 인수시 인수기간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계정과목이 변경됨

### ④ 예적금상품등록

예적금상품등록		저장	초기화	도움말	닫기
<b>기본정보</b>					
소관/회계/계정	문화체육관광부/지역신문발전기금/전체계정				
예적금상품명(한글)		예적금상품명(영문)			
<b>상세정보</b>					
상품분류	5112 정기예금	장단기구분	단기		
원금계정과목	정기예금	이자계정과목	정기예금이자수익		
설정일자	2008-12-08	만기일자			
금융기관					
닫기					

- [장단기구분] : 예적금상품등록 시 장단기구분에 따라 원금 및 이자의 계정과목이 변경

## 원리금회수결의 업무 처리

원리금회수결의내역조회

조회 | 인쇄 | 엑셀 | 초기화 | 도움말

부서: 07-001902 문화체육관광부/지역신문발전기금/한국언론재단 자금관리

예치금융기관: [ ] | 예적금상품: [ ]

회수일자: 2008-12-10 ~ 2008-12-10 | 약정일자: [ ] ~ [ ]

상세 | 삭제 | 기안 | **정리** | 납부서출력

진행상태	결재상태	소관	회계	계정	예적금상품	예적금거래구분	회수일자	회수일자
1	승인	승인	문화체육관광부/지역신문발전기금	전체계정	지역신문 MMDA-081029	회수_원금	2008-10-29	2008-12-10

- [정리] : 수납 후에 원리금회수결의내역조회 화면의 우측 상단의 “정리” 버튼을 반드시 클릭하여 분개가 누락되지 않음

일부 사례들만 설명하였으며, 회계기준 · 결산조정분개 및 결산지침서 확정내용에 따라 일부 항목에 대한 변경이 있을수 있음